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安 秉 禧*

<차 례>

1. 머 리 말
2. 書誌的인 考察
 1) 가람本
 2) 高大本
 3) 延大本
 4) 通文館本
3. 本文의 紹介와 解說
4. 마무리

1. 머 리 말

해방 이후 國語의 歷史的인 硏究는 주로 한글로 표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口訣이나 吏讀 등과 같이 漢字를 빌어서 국어를 표기한 자료는 뒷전에 남겨져 있었다 하여도 지나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글 創制 이전의 국어의 모습을 알기 위하여서는 말할 것도 없고, 創制 이후의 한글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도 口訣이나 吏讀의 硏究는 필요한 것이다. 이 몇 해 사이에 高麗 시대 것으로 보이는 漢文訓讀의 자료인 舊譯仁王經의 落張과 新羅 시대에 필사된 華嚴經에서 이두로 된 跋文이 발견되는 한편, 國語史 硏究의 進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吏讀과 口訣에 대한 硏究가 크게 일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다.

吏讀에 관한 연구는 吏讀가 사용된 文籍과 吏讀의 學習書를 발굴하여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로써 시작된다. 吏讀가 甲午更張 이후 한글로 바뀔 때까지 官廳이나 民間에서의 文書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文籍은 매우 많이 남아

* 서울大學校 敎授, 國語學

있다. 관청에서 文書 出納을 맡는 胥吏는 吏讀의 학습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그 學習書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은 것은 유명한 儒胥必知를 비롯하여 5·6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모두 해방 이전에 內容까지 알려진 책들 뿐이다.[1] 이두의 새로운 學習書를 발견하는 일은 吏讀의 硏究를 위하여서 뜻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國語史 資料를 조사하는 중, 吏讀의 學習書 하나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려는 吏文大師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이미 李秉岐(1940)와 최현배(1961 : 226)에서 언급되었으나, 學界에서 전혀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그 紹介에도 한 가닥 책임은 있다. 거기에서는 이 책을 吏讀文을 한글로 풀이한 것이라고 간단히 지적하였거나, 崔世珍의 吏文輯覽과 함께 우리나라와 元나라, 明나라 등 中國과의 外交 文書에 사용된, 漢文의 독특한 文體인 吏文의 한 자료로 다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 이 책이 吏文이 아니라, 「국내에서 여러 경우에 쓰이는 文句의 읽기를 한글로 뒤쳐 보인 것」(최 현배 1961 : 226)이라 하고,[2] 이어 「吏文이라기보다 吏讀의 편」(위와 같은 곳)이라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學界에서 돌보아지지 않았던 책임은 專門硏究者에게 있다. 이미 알려진 자료, 그것도 남이 인용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原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폐단에 있는 것이다. 원전을 圖書館에서 들추어 보기만 하였어도 이 學習書의 참된 모습은 진작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다. 40여년 전에 그만한 정도의 소개도 쉬운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하면, 우리의 지금 紹介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다만, 이 紹介로써 吏讀의 硏究에 보탬이 있고, 한

1) 이들 文獻이 모두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典律通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거기에는 吏讀를 수집하여 한글로 讀法을 보인 吏文이 그 책 別編에 있는데도 권 4에 있는 것으로 기술된 것은 잘못이다. 더우기 典律通補는 1761년(英祖 37) 무렵에 편찬된 것과 1786년(正祖 10) 무렵에 수정된 두 책이 있어 吏文의 內容도 다르나, 후자만 언급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小倉進平 1929, 최 현배 1961 참조) 이와 관련하여는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2) 이 記述은 최 현배(1961)에 처음 나오고, 그 이전 版에서는 볼 수 없다. 解放 이후에 저자가 본 책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語句의 讀法을 한글로 보였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앞으로 말할 바와 같이, 우리가 본 책은 吏讀에만 한글로 讀法을 보인 것이다. 책이 다른 것인지, 記述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편 原典을 직접 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늦었지만 이 글을 초하기로 한다.

2. 書誌的인 考察

卷頭書名은 「吏文大師」이지만 版心書名은 「吏文」이라 되어 있다〔사진 1 참조〕. 그러므로, 이 책의 이름은 줄여서 그냥 「吏文」으로도 불리어진 것을 알겠다. 갖은이름인 吏文大師는 글자 그대로 吏文을 공부하는 큰 스승을 뜻하므로, 이 책은 吏文의 學習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吏文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中國과의 外交文書에 사용된 독특한 漢文이다. 그러나 이 책은 國內의 官廳끼리, 또는 官民 사이에 주고받는 文書에 쓰인 漢字語句와 吏讀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吏文은 國內의 公文書란 뜻으로 이해된다.

吏文의 이러한 用法은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吏文과 吏讀를 구별하고, 吏文을 장려한 처사는 朝鮮初의 文獻, 예컨대 實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3] 그런데 近代에 들면서 吏讀가 사용된 國內의 公文書의 文體도 吏文이라 한 것이다. 吏文襍例의 吏文, 儒胥必知의 吏胥之體인 글이 바로 그것으로서, 이들 文獻에서는 그러한 文體의 실례로 각종 書式의 國內文書를 들고 있는 것이다. 吏文의 槪念이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國外와 國內의 두 文書에 사용된 文體가 다같이 公文書에 나타나며, 더우기 國內文書의 書式이 外交文書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首尾가 같은 套式을 갖는 사실이[4]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 理由는 어떻든, 이 책의 吏文도 吏讀가 사용된 文書의 文體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도 吏文과 吏讀의 구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吏文은 漢字語句

3) 世祖實錄(1457년〔世祖 3〕 7월甲戌)의 다음 句節이 그러한 예다.
吏曹啓 吏科及承蔭出身 封贈爵牒等項文牒 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俚 請自今用吏用 從之.

4) 예컨대, 公文書의 첫머리가 「爲某事」로 된 것은 양자가 꼭같으며, 結辭가 吏文의 일종인 咨文일 경우 「合行移咨 請照驗施行 須至咨者」인데 우리나라 關文일 경우 「合行移關 請照驗施行 須至關者」로 되어 文書 이름인 咨와 關만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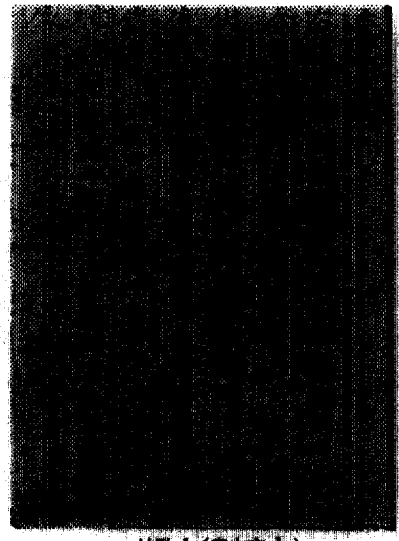


사진 1 (高大本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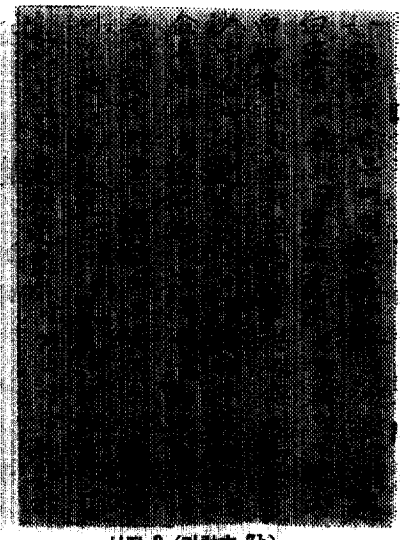


사진 2 (가람本 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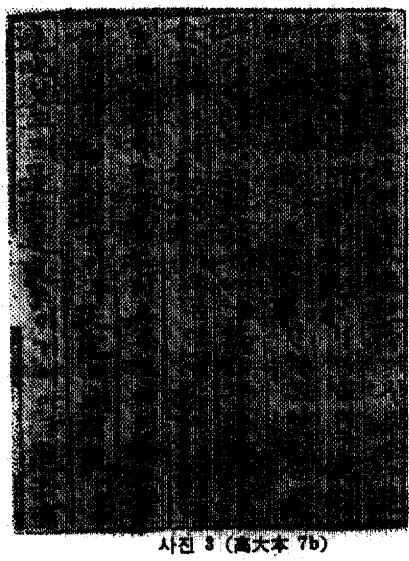


사진 3 (高大本 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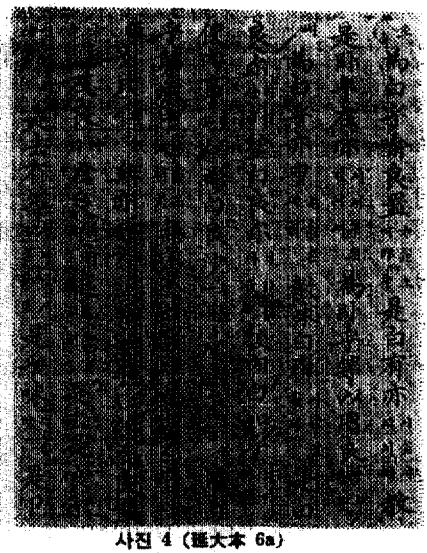


사진 4 (延大本 6a)

와 吏讀를 포함한 文體 전부를 가리키나, 吏讀는 借字로 표기된 固有語로서 吏文의 文脈을 밝혀주는 語句를 가리킨다. 吏文襍例와 儒胥必知에서 吏吐 또는 吏頭라 하여 한글로 讀音을 표시한 것이 吏讀다. 다시 말하면 典律通補의 吏文 등과 같이 吏讀를 吏文이라 할 수는 있어도, 吏文을 吏讀라 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儒胥必知는 吏頭彙編이 있어서 吏讀學習書라 하겠지만, 吏文襍例와 이 吏文大師를 吏讀의 學習書라 함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吏文襍例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한글로 讀音을 보인 것은「註釋」(8a)인데, 이들 책에서 註釋을 단 것은 吏讀뿐이다. 文書의 書式과 漢字語句를 보이기는 하지만, 學習書로서의 주된 구실은 吏讀의 註釋이다. 더우기 國語史資料로서 이들을 다룰 경우에는 吏讀와 그 註釋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이 책을 吏讀學習의 큰 스승이란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의 體裁는 일정한 體系가 없다. 官廳이나 民間의 文書에 널리 사용되는 漢字語句와 吏讀를 배열하고, 吏讀에는 한글로써 讀法을 거의 표기하였다.

그러나 굳이 配列의 순서를 찾는다면, 첫째 文書의 허두와 結末 부분에 쓰이는 套式인 漢字語句와 吏讀를 보인 다음, 둘째 文書에 널리 쓰이는 漢字語句와 吏讀를 文書에 나타나는 순서로 배열하고, 세째 흔히 쓰이는 吏讀만을 들어 보이고, 네째 公文書의 結辭의 套式을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띄어쓰는 일 없이 계속하여 배열하나, 네째 부분은 행을 바꾸는 등 문서에 쓰는 방식으로 써 놓았다. 이 네 部分의 分量을 보면, 둘째 部分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語句와 吏讀가 채록된 文書는 독립된 것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意味의 脈絡이 닿는 語句가 계속되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吏讀에 쓰인 한글 표기는 儒胥必知 등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白」을 모두 하나같이「숣」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 일이 주목된다. 이것은 16세기부터 地方版인 諺解書에서 가끔 보이고, 吏讀學習書의 한글 표기에서도 나

타나는 것이다.[5] 16세기 말기의 지방에서의 刊行인 千字文의 한 책에도 「八(21b), 南(28b)」의 새김에 바로 이러한 받침 표기가 보인다. 그러므로, 이 책은 權威를 가졌던 機關에서 만든 것이 아니며, 또한 빨라도 16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책의 體裁와 한글 表記에 대해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책의 形態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책은 木版인 刊本이 2종이고 붓으로 베낀 寫本이 2종이다. 이 4종의 책에 대하여 하나씩 形態書誌學的인 고찰을 행하기로 하겠다.

1) 가람本

가람 李秉岐선생 所藏本인데, 현재 서울大 圖書館의 가람文庫에 들어 있다. 책의 크기가 세로 21.6cm, 가로 16cm이며 모두 8장의 작은 책이다. 版刻이 조잡한데다, 後刷本이어서 脫畵이 있고 印面이 매우 흐렷하다〔사진 2 참조〕. 保存상태도 좋지 않아서 版心은 거의 마멸되었으며 印面이 떨어져나가 판독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6]

版式도 정교하지 못한 편이어서 四周單邊이나 장 1만 雙邊이다. 한 쪽의 匡郭은 세로 가로 각각 15.8cm, 12.2cm이고 界線이 있는데 8행, 1행 18자이다. 吏讀에 딸린 한글은 작은 글씨로 되었으나, 雙行이 아니다. 다만 주석인 「同前」(1a)과 紙面의 조정으로 「向事」(8a의 끝)의 한글表記만 雙行이다. 版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거의 닳아버렸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白口로서, 아래위에 二葉花文魚尾가 마주 보고 있다. 版心書名 「吏文」과 책장의 차례는 장 5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신히 알 수 있다.

5) 1575년(宣祖 8) 光州版 千字文과 같은 계통의 千字文(日本大東急記念文庫소장)에서 「八, 南」의 새김을 표기한 예를 가리킨다. 典律通補의 1786년 무렵 原稿本에서도 꼭같은 잘못 表記가 보인다.

6) 이 책은 언뜻 보면 볼품없는 책이다. 그런데 卷頭에는 「梅華屋珍玩」이란 李秉岐선생의 藏書印이 있다. 가람文庫藏書 중 貴重本에 이 印記는 있다. 所藏者였던 李秉岐선생은 진작부터 이 책의 價値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秉岐(1940)의 소개도 바로 이 책을 대본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刊年은 미상이다. 그러나, 版式과 紙質 등으로 미루어서 17~18세기의 刊行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刊年의 추정은 19세기 말부터 吏讀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로써 뒷받침된다. 즉 吏讀學習의 필요가 19세기 말부터는 없어졌으므로 이 책의 印出은 늦어도 19세기 중엽 이전이라 하겠다. 이 책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册版이 헐어진 뒤에 인쇄되어 있다. 그러므로, 18세기에는 原刊이 이루어졌고, 그 册板이 100년 정도 보관되다가 인쇄된 책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2) 高大本

高麗大 圖書館의 所藏本이다. 책의 크기가 세로 22.8cm, 가로 16cm, 한쪽의 匡郭이 세로 17.8cm, 가로 12.4cm이어서, 가람本보다는 조금 큰 편이다. 그 밖에 책의 전체 장수, 版式과 行款 심지어 「白」의 독음을 잘못 표기한 점까지도 꼭 같다. 四周單邊으로 통일되어 있는 점만 다르다. 가람本보다는 版刻에 신경을 쓴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初刷本이어서 字畵이 선명한 데다가 保存 상태도 아주 좋은 편이어서 가람本의 印面과 版心 등 의심스런 부분까지 밝혀주고 있다[사진 3 참조].

이 책과 가람本은 이와 같이 版刻過程에서 보인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완전히 같은 계통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책을 臺本으로 하였거나, 다같이 제3의 책을 臺本으로 하여 간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紙質 등으로 보면, 刊年은 가람本이 약간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吏讀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다면 이 책의 간년도 19세기 중엽 이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吏文大師를 吏讀자료, 나아가서 國語史 자료로 이용하는 데는 高大本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책의 가장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延大本

延世大 圖書館 所藏本이다. 위의 2책과는 달리 筆寫本이다. 정성을 들여서 베낀 책이다. 吏讀의 독음을 한글로써 雙行으로 한 것이 다를 뿐, 「白」의

잘못된 표기까지 가람本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刊本을 보고 그대로 베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베끼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차이는 가람本과 高大本 사이에도 나타난다. 刊本과 같은 系統의 책인 것이다. 筆寫의 年代는 미상이다. 紙質 등으로 미루어서 19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사진 4 참조〕.

책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17.1cm, 23.8cm이다. 界線이 없이 本文을 썼는데, 한 쪽이 9행, 1행 18자, 吏讀의 讀音 表記와 註釋은 雙行이다. 따라서 총매수가 7장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책은 장 8 부터 「張良餘訣」이라 하여 行算法, 作石法, 解斗法, 九九法 등을 附錄으로 하고 있다. 附錄이라 하지만 그것이 모두 31장으로 本文의 4배가 훨씬 넘는 분량이다. 그러므로 이 延大本은 표지에 「吏文大師」라고 써 있으나, 地方 官廳의 胥吏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知識을 주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吏文大師란 책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4) 通文館本

通文館 李謙魯씨 소장의 筆寫本이다. 藏書印으로 「晋山(白文朱方印), 姜再淑(朱文方印), 海軒(朱文方印)」 (이상 1a 右下隅)이 있으므로, 原所藏者가 姜再淑임을 알 수 있으나 身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자의 藏書印으로 「漢城禮信文庫」(朱文方印, 1a 右欄上)가 있다. 舊京城帝大醫學部교수 中村 拓의 소장을 거쳤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책도 延大本과 마찬가지로 刊本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吏讀의 한글讀音을 小字로 1행에 표기하고, 「白」의 한글讀音 받침을 잘못 표기한 점까지 일치한다〔사진 5 참조〕. 그러나 行格의 차이로 전체 장수가 6장이며, 筆寫過程에서의 잘못으로 刊本의 「다딤」이 「다짐」으로 되는 등 부분적인 차이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口蓋音化와 관련된 讀法에서 두드러지므로, 通文館本은 口蓋音化가 완성된 地方이거나 時期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筆寫

의 年代는 미상이다. 吏文大師에 이어 실린 附錄인 年分單字式에 「戊戌年(1718 肅宗44) 安東府使權以鎭時」, 安東府傳令에 「丙寅(1746 英祖22)多府使李昌誼瓜滿在京時」란 年記가 있으므로, 18세기 후반 安東이거나 그 近邑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紙質 등도 그만큼 오랜 것으로 보인다.

책의 크기는 세로 가로 각각 23.5cm, 16cm이다. 用紙는 이미 사용한 종이를 뒤집어 사용한 것이나, 邊欄과 版心(版心題는 없다)을 인쇄하여 정성스럽게 필사하였다. 1면 10행, 1행 19자 안팎으로, 모두 6장이다. 이어 附錄으로 官斜規式 등 地方行政의 例規와 書式을 19장에 걸쳐 수록하였다. 중간에 베끼지 않은 白紙가 16장 있으므로 전체 장수는 모두 41이다. 그런데, 附錄을 갖는 점으로써 이 책의 性格도 延大本과 꼭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7]

이상에서 행한 書誌的인 考察을 요약하면, 이 책은 18세기 경 胥吏에게 文書에 쓰이는 漢字語句와 吏讀를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용의주도한 計劃이나 깊은 學識으로 체계를 세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地方 官廳의 文書 謄錄에서 編者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語句와 吏讀를 적당히 가려뽑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刊本이 현재 2종이나 있는 점에서 이 책이 비교적 널리 이용된 吏讀의 學習書임은 異論이 없다. 이제 이 책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本文의 紹介와 解說

이 책의 本文도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장 1 제 1 행의 卷頭書名에 이어 제

7) 최 현배(1961 : 226)에는 吏文大師와 같은 것으로 吏文이란 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 吏文의 現存本을 알 길이 없으나, 李仁榮교수도 그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 책에 대한 說明을 옮겨적으면 다음과 같다.

宣仁間刻本 無序跋 不知撰人名氏 首吏讀文 以國文標音 次九九次田畝算法次六甲次干支古號等 四周單邊 有界每半葉七行行十六七字不等 匡郭長 一六·七糎乃至一七·〇糎 廣一二·七糎 白口或黑口(李仁榮 1968 : 422)

책은 크기와 體裁 등이 가람本과 같고, 附錄을 갖는 점이 延大本과 같다. 刊年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본 것은, 實册을 못본 이상 可否를 말할 처지가 못된다. 李仁榮교수의 刊年推定은 대체로 정확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17~18세기 경에는 吏文大師와 비슷한 吏文이란 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행부터 시작된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本文은 아무런 體系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句節을 나누어서 標題語로 삼고 간단한 解說을 붙이기로 한다. 모든 句節은 原典대로 옮겨 적지만, 「白」의 讀音表記와 같은 한글 字形의 잘못을 바로잡아 「ᄉᆞᆷ」으로 적는다.

原典은 高大本을 기본으로 하고, 異本에 따른 差異는 解說에서 지적한다. 標題로 오른 句節은 일련번호를 매겨 檢索의 便宜를 도모하는데, 原典의 책장이 앞뒤 쪽으로 바뀔 때마다 標題語 안에서 괄호와 숫자로 밝혀놓는다. 예컨대, 어떤 標題語에 (3b)라 있으면 그 곳에서 장 3 뒷쪽이 끝났음을 뜻하므로, 그 앞에 인용된 標題語는 原典의 장 3 뒷쪽에 실려있는 것이다. 이 글만으로도 吏文大師의 內容을 인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1. 右謹言 : 民間人이 官廳에 제출하는 文書의 첫머리에 쓰는 句節. 다음의 右謹陳과 같이 「앞의 사람(右人)이 삼가 말씀드리는 바」의 뜻이다.

2. 右謹陳所志矣段 : 所志는 陳情書나 告訴狀을 가리키고, 矣段은 主題를 표시하는 吏讀로서, 전체의 뜻은 「앞의 사람이 삼가 말씀드리는 所志인 즉은」이 된다. 段을 「단」으로 읽힌다. (No. 146, 215 참조)

3. 右所陳爲白內等ᄒᆞᆷ겔든 : 右所陳은 No. 1과 같이 文書의 첫머리에 쓰는 句節. 爲白內等은 「하옵기는, 하옵건대」를 뜻하는 吏讀인데, 그 讀法이 특이하다. 延大本의 「ᄒᆞᆷ니든」이, 어떤 刊本을 정확히 옮겼다면, 옳은 것이 아닌가 한다. 「ᄒᆞᆷ겔든, ᄒᆞ겔든」으로 읽히는 吏讀는 爲白去等(No. 205)과 爲去等(No. 75)이다. 그러나 다른 文獻에서 「ᄒᆞᆷ니든(典), ᄒᆞᆷ옵든(儒)」으로 읽히나 ᄒᆞᆷ알든(襍)」으로도 읽히는 점으로 보면,[8] 「ᄒᆞᆷ알든」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뒷날로 밀 수 밖에 없다.

4. 奴矣段 : 奴는 賤人이 제출하는 文書에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吏讀, 전체는 「이 奴子인즉」을 뜻한다. 矣段은 No. 2 참조.

8) 吏讀文獻의 出典表示는 略號로 한다. 略號와 文獻名은 다음과 같다.
羅(古今釋林의 羅麗吏讀), 襍(吏文襍例), 語(五洲衍文長箋散稿의 語錄辨證說), 儒(儒胥必知), 典(典律通補 1786년 무렵 原稿本), 便(吏讀便覽)

5. 公事爲相考事云云 : 公事는 官廳의 事務란 뜻인데, No. 1~4가 民間人이 官廳에 제출하는 文書의 첫머리에 쓰이는 句節인 것에 대하여, 爲相考事는 官廳에서 다른 官廳으로 보내는 文書의 첫머리에 쓰이는 것임을 나타낸다. 相考는 參考, 또는 調査, 따라서 爲相考事는 참고하거나 조사할 일이란 뜻으로서 公文書의 題目이다. 題目이 降雨와 年末報告이면 爲雨澤事, 爲年終事 등으로 쓴다. 云云은 원래 책에서는 反復記號 ㄱ로 되어 있다. 云云은 첫머리가 爲相考事로 시작되는 公文書의 本文을 줄인 것이다. 延大本은 일체의 反復記號를 안 쓰고 같은 글자를 되풀이 쓰고 있다. 정성을 들여서 필사한 책인 것이다.

6. 合行牒呈 : 行은 爲와 같은 것으로서, 전체로는 牒呈을 하기에 합당하다는 뜻이다.[9] 牒呈은 下級官廳에서 上級官廳으로 보내는 公文書다.

7. 伏請照驗施行 : 照驗은 대조하거나 검토하는 일, 施行은 처리하는 일인데, 전체의 뜻은 文書內容을 그와 같이 하여달라고 엎드려 바란다는 것이다.

8. 須至牒呈者 : 모름지기 牒呈을 送至한다는 뜻이다.

9. 右牒呈某牧使府使郡守又某使 : 右牒呈은 위의 牒呈을 보낸다는 뜻, 某牧使 등이 그 相對다. 牧使와 府使는 府, 郡守는 郡의 員을 가리키고, 又某使는 또는 觀察使라고 하는 뜻이다. No. 6~9는 牒呈의 끝에 상용하는 套式으로, 우리나라와 中國의 外交文書인 吏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No. 379 참조.

10. 爲行下事云云 : 公文書 題目의 1종, No. 5 참조. 行下는 指示 또는 命令을 뜻한다.

11. 合行移關請同前 : 關文이라는 公文書의 끝에 사용하는 套式, No. 6~9 참조. 移關은 關文을 보낸다는 것, 關은 關文 또는 關子(關字로도 적는다)인데, 同級의 官廳 사이거나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내는 公文書다. 同前이란 夾注는 앞의 No. 7~9와 같다는 뜻이다. 즉 關文의 끝에 상용되는

9) 이 項目부터 No. 8까지는 牒呈의 結辭의 套式이다. 이것은 吏文에도 보이는 것(脚註 4 참조)으로서, 그에 대한 註釋이 崔世珍의 吏文輯覽(Ⅱ, 16)에도 보이나 1554년(明宗 9)의 經國大典註解後集에도 보인다. 다음에 옮겨 적어 둔다.
合行移關—行猶爲也 言合爲移關也(下 47a)
須至關者—須要送至關文也(下 47b)

「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某衙門」(No. 380 참조)을 줄인 것이다.

12. 侤音다딤云云 : 侤音은 現代語의 「다짐」인데, 여기서는 어떤 事實이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事實대로 실행할 것을 맹세하는 文書를 가리키는 吏讀이며, 다른 吏讀書에서는 口蓋音化되어 「다짐」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通文館本은 「다짐」으로 잘못 필사되어 있다. 云云은 그 內容인데, 云의 둘째 字는 反復記號로 된 것이다.[10] No. 5 참조.

13. 白等㑹든 : 侤音 등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吏讀로서, 「사뢰기는, 사뢰건대」의 뜻이다. No. 3 爲白內等과 비슷한 것이다.

No. 1~13은 각종 文書의 첫머리와 結辭의 套式을 보인 것이다.

14. 矣身亦의몸여 : 矣身은 文書를 제출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키며, 亦은 主格을 나타내는 吏讀, 전체로는 「이 몸이, 본인이」를 뜻한다. 通文館本 「이몸여」는 잘못 쓴 것이다.

15. 他矣財穀 : 矣는 屬格을 뜻하는 吏讀, 전체로는 남의 財產과 穀食을 뜻한다. 他矣는 No. 36 참조.

16. 夜間突入 : 밤에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漢字成語다. No. 20까지 계속이다.

17. 恣意偸取 : 恣意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진다는 뜻이다.

18. 連命資生 : 목숨을 이어가며 生活을 해간다는 뜻이다.

19. 現露辭緣 : 辭緣은 內容으로, 전체로는 드러난 內容이란 뜻이다.

20. 依律施行 : 法律에 따라서 처리, 또는 집행한다는 뜻이다.

21. 報使敎事이샨일 : 報使는 上級官廳에 書類나 사람을 보내는 일, 敎事는 「하실 일」을 뜻하는 吏讀다. 敎事의 讀音이 가람本에서는 脫畫으로 「이샤일」, 延大本에서는 誤字로 「이샨닐」로 되어 있다. 敎는 尊敬法의 用法을 갖는 吏讀다. No. 30 참조.

22. 矣徒等亦의내등(1a)이여 : 矣徒等은 複數인 文書提出者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吏讀로서, 單數인 경우의 No. 14 矣身과 대립된다. 徒는 人稱代名詞의

10) 原典에서 反復記號로 된 것은 印刷의 편의로 모두 「云云」과 같이 앞의 漢字로 고친다. 이하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複數, 等은 두루 쓰이는 複數의 接尾辭를 나타낸다. 다만, 等이 다른 吏讀書에서 「들」로 읽히는 데 대하여 이 책의 讀法은 특이하다. 이하 No. 59까지는 한둘 例外가 있으나, 吏讀語彙를 수록한 것이다.

23. 矣身向爲良의몸향ᄒᆞ야 : 吏讀便覽과 吏文模例에도 나타나는데, 矣身은 No. 14 참조. 向爲良은 向爲로만 쓰이기도 하는 吏讀로서, 「향하여, 대하여」를 뜻한다.

24. 矣身耳亦의몸ᄉᆞ려 : 耳亦은 中世語의 「ᄉᆞᄂᆡ, ᄉᆞᆫ」과 관련이 있는데, 「만(이), 뿐(이)」을 뜻하는 吏讀다. 가람本은 脫書으로 「ᄉᆞ려」로 나타난다.

25. 易亦아ᄂᆞ혀 : 「이내, 쉽게」의 뜻인 吏讀다. 가람本에서는 「아ᄂᆞ허」인데, 脫書이다. 亦은 다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副詞의 징표로 쓰인다.

26. 專亦전혀 : 副詞 「전혀」에 해당한다.

27. 便亦ᄉᆞ릭여 : 「문득」을 뜻하는 吏讀인데, 다른 文獻에서는 使亦(典, 羅)으로 나타난다. 언뜻 보면 使가 便과 字樣이 비슷하면서, 그 讀音이 讀法의 첫 音節과 같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28. 先可아직 : 「아직, 우선」의 뜻이다.

29. 最只안직기 : 「가장, 매우」를 뜻한다. 延大本은 「아직기」로 되어서 語錄辨證說과 같고, 通文館本은 「아지기」다. 筆寫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러한 讀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0. 敎是이시 : 尊稱의 主格助詞 「께서」를 뜻하는 吏讀로, 近代語의 吏讀資料에 사용된다. 中世語의 資料에서는 繫辭語幹에 尊敬法接尾辭가 연결된 形態로서 活用形 敎是去等, 敎是遣 등에 나타난다.

31. 物物白活갇갇발궐 : 儒胥必知에도 나오는 吏讀, 物物은 「갖가지」, 白活은 官廳에 陳情하는 일을 뜻한다.

32. 這這俜音ᄃᆞᆫᄃᆞᆫ다딤 : 這這는 「又又(典), 갓갓(儒, 羅)」으로 읽혀, 物物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원래는 「낱낱이, 조목조목이」의 뜻으로서, 物物과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俜音은 No. 12 참조. 通文館本과 延大本의 「다짐」은 口蓋音化된 語形으로 잘못 필사한 것이다.

33. 追于조초 : 「좇아, 따라」를 뜻한다. 延大本은 「좀초」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近代語의 吏讀資料에서 追乎와 함께 쓰이고 있다.

34. 別乎벼롬 : 일정한 비율로 배당, 또는 분담하는 일을 가리킨다.

35. 呑不喩쁜안디 : 呑은 「뿐」의 뜻으로서 叱 또는 分叱로도 표기되나 이 책의 표기가 오랜 것이다. 不喩은 否定語 「아니라」의 뜻이다. 延大本의 「뿐안」은 「디」의 脫字다.

36. 他矣남의 : 他가 「남」으로 訓讀된 것을 보인 例다. No. 15 他矣도 같은 讀法이라고 추정된다. 다른 文獻에서 「놈의(便), 남의(襤, 羅, 儒), 더의(羅), 저의(典)」로 읽히는데, 뒤의 두 가지는 彼, 其로 잘못 읽은 것이며, 「남의」는 現代語의 語形이다. 이 책의 讀法은 吏讀便覽과 함께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7. 帖字 : 吏讀書에서 「톄ᄌᆞ, 쳬ᄌᆞ」로 읽히는데, 證書나 委員狀을 뜻한다. 字는 子로도 쓴다.

38. 件記ᄇᆞᆯ긔 : 物品의 種類와 數量을 기록한 것.

39. 置簿 : 帳簿, 또는 帳簿에 기록하는 일.

40. 除良더러 : 「덜고, 제하고」의 뜻이다.

41. 捧上받자 : 官廳에 物品을 바친다는 뜻이다. 「밧자(儒, 語, 襤, 典)」 등으로 읽히나, 中世語에 비추어서 이 책의 讀法이 오랜 것이다. 延大本의 「받죄」, 通文館本의 「밧자」는 잘못.

42. 紘如시우러 : 「잇달아, 뒤따라, 때문에」의 뜻인 吏讀다.

43. 初如초혀 : 「처음」을 뜻하는데, 初亦이라고도 표기된다.

44. 役只겨기 : 어떤 일을 치러냄을 뜻한다. 가람本 「겨긔」, 延大本 「져긔」는 脫畫 또는 誤寫에 의한다.

45. 導良드듸여 : 「좇아, 따라서」의 뜻. 通文館本 「드듸여」는 잘못 쓴 것이라 생각된다.

46. 舍音ᄆᆞᄅᆞᆷ : 農地의 監督者, 다른 文獻의 「마름(語), 말음(典, 儒)」으로 읽히는데, 이 책의 讀法은 中世語(龍飛御天歌 등)와 일치한다.

47. 擬只시기 : 擬只의 讀法은 「비기(語), 비김(典), 시기비기(羅), 시기(儒)」 등 구구하다. 그러나, 「시기」와 「비기」의 두 讀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시기비기」는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11] 전자는 이 책의 讀法으로 中世語 「시기—」에 대응하여 「시켜」를 뜻한다. 大明律直解에 「집행하다」로 사용된 用例도 이와 같은 뜻이다. 후자는 擬의 訓과 같이 「비교하여」의 뜻이다. 延大本에는 잘못되어 「시긔」로 나타난다.

48. 的只마기 : 「정확히, 알맞게」의 뜻.

49. 爲只爲ᄒᆞ기삼 : 「하기 위하여, 하도록」의 뜻, 延大本의 「ᄒᆞ긔삼」은 잘못 필사한 것이다.

50. 卜定지뎡 : 일정한 物品을 각 地方에 부담시켜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51. 是如이다 : 繫辭 「이라」에 해당하는데, 그대로 引用形에 사용된다.

52. 良中沙(1b)아히사 : 良中은 處格助詞로서, 전체로는 「에야」에 해당된다.

53. 始叱비롯 : 「비롯」(典), 「비롤」(羅) 또는 「비라, 비롯」(儒)으로도 읽히나, 이 책의 讀法이 「비롯」과 함께 오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에서 始叱, 始只(典) 로 표기되나, 후자는 잘못 전하여진 것이다. 「비롯하여, 시작하여」의 뜻이다. 通文館本의 「비롯」은 잘못.

54. 謀計向入앗드려 : 謀計는 計略 등과 같은 漢字語, 向入은 「안들이」(典)로도 읽히는데, 「하려 하여, 생각하여」를 뜻하는 吏讀로서, 전체로는 「計策을 부리려고 하여」의 뜻이다.

55. 下手不得햐슈모질 : 吏文襍例에도 꼭같이 나타나는데, 下手는 「着手, 일에 손댐」, 不得은 不能을 뜻하는 吏讀, 전체로는 「손을 대지 못하다」가 된다. 下의 讀音이 「햐」인 점에 주의할 것.

56. 更良가서야 : 中世語 「가서야」(更), 現代語 「다시」에 해당한다.

57. 作文질문 : 土地 및 戶籍臺帳 등 官廳의 文書를 가리킨다.

58. 尺文자문 : 官廳에 納品하였을 때 써주는 領收證, 「조문」(語, 儒)으로도

11) 이 「시기비기」(羅)는 종래에는 「시비거기」로 읽었다. (小倉進平 1929 : 432) 그러나, 이 책의 夾註表記는 세로로 읽을 때도 있으나, 가로로 읽을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는 「시기비기」와 같이 가로 읽는 것이다.

읽히나, 尺의 訓으로 보아 이 책의 讀法이 오랜 것이다.

59. 不多안들 : 否定語「아니」에 해당하는데, 그대로 叙述語로도 사용된다.

60. 遲晩推考 : 遲晩은 罪人이 자백한 供述을 마지막으로 다짐받는다는 뜻의 吏讀, 推考는 罪人에 대한 調査 또는 訊問을 뜻한다.

61. 報狀牒呈 : 報狀이나 牒呈 모두 上級官廳으로 올리는 公文書를 뜻한다.

62. 移文 : 官廳 사이에 文書로 조회하는 일을 가리킨다.

63. 關字粘移 : 關字는 No. 11 참조, 粘移는 粘連과 移文의 준말, 粘連은 다른 文書를 첨부하는 것이다. 전체의 뜻은 關字를 첨부하여 조회하는 公文書를 보내는 것으로서, 上級官廳의 命令을 알리는 公文書다.

64. 秘密私通 : 私通은 고을의 胥吏들이 公務에 관하여 非公式的으로 주고받는 通信, 전체로는 비밀리에 행하여지는 私通을 뜻한다.

65. 相考斟酌짐작 : 相考는 No. 5 참조, 斟酌은「짐작, 참작」에 해당하나, 참작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66. 分揀 : 원래의 뜻대로 분별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나, 吏讀資料에서는 보통 罪를 용서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67. 招引設計 : 招引은 共謀者로 끌어들이는 일, 設計는 일을 꾸미는 것을 뜻하는 漢字語들이다.

68. 懲戒奸滑 : 滑은 猾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漢字, 전체로는 간활한 사람을 징계한다는 뜻이다.

69. 作弊援引 : 作弊는 나쁜 일을 저지른다는 것, 援引은 남을 끌고든다는 것을 뜻하는 漢字語들이다.

70. 決罪決杖 : 決罪는 刑罰의 執行, 決杖을 杖刑의 執行을 뜻한다.

71. 爲等如ᄒᆞ트러 :「통틀어, 모두」를 뜻하는 吏讀, 中世語의「이트렛」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가람本과 延大本의「ᄒᆞ트리」는 脫畫이거나 잘못 필사한 것이다.

72. 岐如가로러 : 副詞로「따로이, 분리하여」를 뜻한다. 가람本「가로되」는 脫畫, 延大本「가로려」는 誤寫인 듯하다.

73. 其等徒저드내 : 「저들, 그들」을 뜻하는 吏讀다. 다른 文獻에서의 「저등이(典), 져드닉(羅, 儒)」보다 이 책의 讀法이 中世語의 모습에 가깝다. 延大本의 「저드버」는 잘못 필사한 것.

74. 憤怒發惡 : 漢字成語로 분노하고 발악하는 일을 뜻한다.

75. 爲去等ᄒᆞ걸든 : 「하거든」에 해당하는 吏讀, 借字대로의 讀法은 다른 文獻의 「ᄒᆞ거든」(儒, 羅)이 옳으나, 이 吏讀가 中世語資料에서 爲去乙等(紹修書院立議)으로 나타나며, 또 이 책에서 爲白去等(No. 205 참조)이 「ᄒᆞ숣걸든」으로 읽히는 점에서 讀法 「ᄒᆞ걸든」이 보다 古形이라 할 것이다.

76. 爲去乙ᄒᆞ거ᄅᆞᆯ : 現代語 「하거늘」의 吏讀다. 다른 文獻에서 「ᄒᆞ거늘」(儒, 羅)로 읽히나, 中世語 「ᄒᆞ거늘, ᄒᆞ거ᄂᆞᆯ」의 交替에 비추어 이 책의 讀法은 「ᄒᆞ거ᄂᆞᆯ」에 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거늘」(No. 140, 167 참조)이 나타난다.

77. 粗也아야라 : 讀法은 다른 文獻과 같다. 「겨우, 간신히」를 뜻한다.

78. 爲乎所ᄒᆞ올배 : 「할 바」를 뜻하는 吏讀다. 다른 文獻에서는 「ᄒᆞ올바」인데, 이 책은 主格形을 보인 讀法이다.

79. 詮次以젼ᄎᆞ로 : 「까닭으로」에 해당하는 吏讀, 讀法도 다른 文獻과 같다.

80. 爲白齊ᄒᆞ숣져 : 文의 終結位置에 나타나는 吏讀로, 「하옵니다. 하옵소서」를 뜻한다. 讀法이 다른 文獻에서도 같다.

81. 爲白置ᄒᆞ숣두 : 「하온데, 하여도」를 뜻하는 吏讀다.

82. 爲(2a)白遣ᄒᆞ숣고 : 「하옵고」를 뜻하는 吏讀다.

83. 行下事推考 : 行下事는 No. 10, 推考는 No. 60 참조. 전체로는 上部의 命令 또는 指示한 일을 調査함을 뜻한다.

84. 捉送搜括 : 捉送은 罪人을 잡아 보내는 일, 搜括은 수색하여 찾아내는 일을 가리키는 漢字語이다.

85. 擲奸看審事 : 擲奸은 摘奸이라고도 하는데 檢查하는 일, 看審은 실지로 調査하는 일을 가리키는 漢字語이다.

86. 荒唐丐乞 : 허둥지둥 황당하게 개걸(丐乞), 즉 애걸한다는 漢字語이다.

87. 三切隣 : 切隣은 가까운 이웃, 三切隣은 現代語「삼이웃」으로 1601년(宣祖 34)의 受敎(受敎輯錄 刑典文記條), 吏文襍例 등에 用例가 있다.「삼이웃」은 국어대사전(李熙昇편)에 의하면「이쪽저쪽의 이웃」으로 풀이되어 있다.

88. 幷以아오로 :「함께, 모두」를 뜻하는 吏讀다.

89. 爲白等ᄒᆞ숣든 :「하옵기는」의 뜻인 吏讀, 白等은 No. 13 참조.

90. 典當以뎐당으로 :「典當할 일로」를 뜻하는 句節이다.

91. 爲乎ᄒᆞ온追于조초 : 中世語의「혼 조초」(釋詳 Ⅶ, 86)에 해당하는 吏讀로, 전체로는「한 것을 따라」를 뜻한다. 追于는 No. 33과 중복된다.

92. 爲白良尒ᄒᆞ숣아금 :「하온즉, 하옵기에」의 뜻인 吏讀다.

93. 爲臥乎ᄒᆞ누온 :「하는」을 뜻하는 吏讀로, 爲乎(No. 91)에 상대하여 現在時制를 표시함이 다르다.

94. 爲白良結ᄒᆞ숣아져 :「하옵고저」를 뜻하는 吏讀다.

95. 爲白如可ᄒᆞ숣다가 :「하옵다가」를 뜻하는 吏讀다.

96. 爲白有昆ᄒᆞ숣잇곤 :「하였사오니」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는「ᄒᆞ숣잇곤(典), ᄒᆞ숣빗곤(儒), ᄒᆞ올잇곤(羅)」으로 읽었으나 이 책의 讀法이 비교적 정확한 듯하다.

97. 爲白置ᄒᆞ숣두 : No. 81과 중복.

98. 有亦이시니여 :「있는지라, 있으므로」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의 讀法도 이와 비슷하다. 延大本「이시이여」는 잘못 필사한 것이다.

99. 爲行如可ᄒᆞ녀다가 :「하고 있다가」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ᄒᆞ엿다가(襍), ᄒᆞ여ᄯᅡ가(儒), ᄒᆞ려다가(典)」로 읽히고 있으나 이 책의 讀法이 行의 中世語 새김에 일치한다. 吏讀의 行은 動作의 進行을 나타낸다. 通文館本「ᄒᆞ녀다가」는 羅麗吏讀와 같은데, 보다 古形의 讀法이지만, 여기서는 잘못 베낀 결과다. 如可는 No. 95 참조.

100. 閑良閑丁 : 閑良은 원래 任官되지 않은 武官을 뜻하나 일정한 職이 없는 男子, 閑丁은 아무런 役에도 편입되지 않은 成人인 男子를 가리킨다.

101. 餘丁以으로 : 餘丁은 軍役에 징집될 壯丁을 제외한, 그 밖의 男子, 以는

造格助詞인데 「詮次以(No. 79), 典當以(No. 79)」에도 나타난다.

102. 抄付 : 名單에 이름을 올리는 일, No. 100~102는 연속되는 句節이다.

103. 受贈納賂 : 受贈은 賂物을 받는 일, 納賂는 賂物을 주는 일, 전체로는 賂物을 주고 받는 罪를 가리킨다.

104. 吟囑徧聽 : 吟囑은 은밀히 부탁하는 일, 徧聽은 두루 듣는 일, 전체로는 은밀한 청탁을 모두 듣는다는 뜻이다. 延大本은 「吟囑」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필사한 것이 아니라면 입으로 부탁한다는 일인 듯하다.

105. 飾詐符同 : 飾詐는 거짓으로 꾸미는 일, 符同은 共謀하는 일을 가리킨다.

106. 退伊물리相考 : 羅麗吏讀, 典律通補, 吏讀便覽 등에도 나타나는 吏讀다. 退伊는 退是(大明律直解)로도 적히는데 「延期(하여)」를 뜻한다. 延大本의 「물러」는 잘못이 아니라면, 「退伊相考물러샹고」(羅)에 비추어서 다른 讀法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文獻에서는 「물이(儒), 물러(便), 몰리(典)」로 읽히고 있으나, 모두 脣音化된 形態다. 相考는 No. 5 참조, 전체로는 「연기하여 調査 또는 參考하는 일」을 뜻한다.

107. 逃亡爲是遣(2b)ᄒᆞ이고 : 전체의 뜻은 「도망하게 하고」다. 爲是遣는 爲遣의 使動인데, 특이한 用例에 속한다. 보통 令是遣(典, 便)으로 적히는 것이다. 羅麗吏讀에 「逃亡合是遣도망ᄒᆞ이고」로 된 것이 그 예다. 合은 令의 誤字다. 그러나, 儒胥必知에 「爲是遣」가 있으므로, 이 책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108. 爲白乎事ᄒᆞ옴온ᄉᆞ : 「하올 일, 하온 일」을 뜻하는 吏讀, 事가 「일」로 訓讀(No. 21 참조)됨이 보통이나 音讀됨이 특이하다. 斗落의 「마지기」가 音讀되는 것과 같은데, 近代 이후의 變遷으로 보인다.

109. 爲白乎喩ᄒᆞ옴온디 : 「하올지, 하온지」를 뜻하는 吏讀, 延大本의 「ᄒᆞ옴온지」는 잘못 필사한 것이나 口蓋音化된 形態로 儒胥必知 등에도 보인다.

110. 爲乎旀ᄒᆞ오며 : 「하며」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도 같이 읽힌다.

111. 諸雜事考准 : 諸雜事는 여러가지 일, 考准은 考準이라고도 쓰는데 謄本을 原本과 대조하는 일을 가리킨다.

112. 未盡條件乙良율안 : 吏文襍例, 羅麗吏讀에서도 나타나는데, 「미진한 조건을랑」을 뜻하는 句節이다. 乙良은 이 책에서도 「으란」(No. 230, 232, 271)으로 읽혔으나, 모두 對格助詞와 主題表示의 「은」의 결합형이다.

113. 囚禁督促 : 囚禁은 잡아가두는 일, 전체로는 구속하고서 독촉한다는 뜻이다.

114. 秩秩以디딜로 : 「갖가지로, 낱낱이」를 뜻하는 吏讀다. 讀音이 「지질로(襍), 질질로(儒, 羅), 딜딜로(便)」로 나타나기도 하나, 秩의 中世語 漢字音이 「딜」(新增類合 下 20b)인 점과 ㄹ이 舌端音 앞에서 탈락하는 形態音素論的인 사실로써 이 책의 讀法이 더 오래고 정확하다고 하겠다.

115. 惠伊저즈리分揀 : 吏文襍例, 儒胥必知를 포함한 모든 吏讀文獻에 보이는 예다. 惠伊는 「두루, 널리」를 뜻하는 吏讀, 分揀은 No. 66 참조, 전체로는 두루 용서한다는 뜻이다. 惠伊는 「져즈리(儒), 저지리(典)」로도 읽히나, 이 책은 吏讀便覽과 같다. 吏讀의 原義가 孺需(小倉進平 1929 : 466)이라 한다면, 「저즈리」가 더 오랜 形態다.

116. 勢家投托 : 漢字成語로서, 세력있는 집에 몸을 붙여 의지한다는 뜻이다.

117. 壓良爲賤 : 良人을 억압하여 賤人 곧 奴婢로 만든다는 漢字成語다.

118. 僞造文記 : 文書를 위조하는 일, 또는 그러한 文書를 뜻한다.

119. 隣里不睦 : 이웃끼리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120. 用術書員 : 用術은 弄奸을 부리는 일, 書員은 面을 총괄하는 衙前, 전체로는 事務處理에서 弄奸을 부리는 書員이라는 뜻이다.

121. 頑惡鄕吏 : 頑惡, 곧 완고하고 악질적인 고을 衙前을 뜻하는 말이다.

122. 恃老爲惡 : 恃老는 늙음을 빙자하는 일, 전체로는 늙음을 빙자하여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다.

123. 非理好訟 : 非理의 일로 訴訟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124. 輕蔑士族 : 士族 곧 兩班을 경멸한다는 뜻이다.

125. 凌慢長上 : 長上 곧 윗사람을 능멸하고 항거한다는 뜻이다.

126. 年壯處女 : 年壯은 나이가 많다는 뜻, 보통 30세 안팎을 가리킨다. 따

라서 전체로는 시집갈 나이가 지난 處女란 뜻인데, 守令七事의 하나인 戶口를 늘리는 일에 어긋난 결과다.[12]

이상 No. 116부터서는 모두 法規에 벗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漢字成語들이다.

127. 敎事이샨ᄉᆞ : 敎事는 No. 21에서도 나타나 「이샨일」로 되어, 이 讀法과 다르다. 事가 訓讀됨이 전통적이나, 音讀되는 일도 있음을 爲白乎事(No. 108)와 함께 보여주는 例다.

128. 矣身耳亦의몸ᄠᅴ : No. 24와 중복, 讀音 「ᄠᅴ」만 다르다. 이 책의 「ᄠᅴ, ᄯᅴ」는 같은 音節表記임을 말한다.

129. 萬端侵責 : 萬端으로 침범하고 착취한다는 뜻의 漢字成語다.

130. 爲乎矣ᄒᆞ오ᄃᆡ : 現代語 「하되, 하기를」을 뜻하는 吏讀다.

131. 便亦ᄉᆞ릭여 : No. 27과 중복. 吏文襍例에 No. 132와 연속되어 나타난다.

132. 不納爲乎樣以ᄒᆞ온양으로 : 爲乎樣以는 「ᄒᆞ오량으로」(典)도 읽히는데, 「한 것처럼, 한 양으로」를 뜻하는 吏讀, 전체로는 納付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다는 뜻이다.

133. 次知並囚畬ᄉᆞᆷ(3a) : 次知는 擔當, 並囚는 2인 이상의 罪囚를 함께 잡아 가두는 일을 뜻하는 吏讀다. 並囚는 「잡ᄉᆞᆷ」(儒)로도 읽히나, 中世語로는 이 책의 讀法이 뒷받침된다.

134. 爲白沙餘ᄒᆞᅀᅡ나마 : 「하올 뿐 아니라」를 뜻하는 吏讀다. 다른 文獻에서는 爲白沙餘良(便, 儒, 羅)으로 적히는데, 爲良이 爲로도 적히는 사실(大明律直解, 淨兜寺造塔記 등)에 비추어서 두 表記가 일찍부터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35. 又爲精兵抄出 : 抄出은 뽑는 일, 전체로는 「또 精兵을 뽑기 위하여」란 뜻의 句節이다.

136. 爲白臥乎所ᄒᆞᅀᅡᄂᆞ온배 : 「하옵는 바」를 뜻하는 吏讀다. 所의 讀法이 특

12) 年壯處女에 관한 牒呈은 1568년(宣祖 1) 忠淸道丹陽郡守가 觀察使에 보낸 牒呈에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는 安秉禧(1975 : 6)을 참조.

이한데, No. 78 爲乎所의 경우와 같이 主格形으로 읽힌 것이다.

137. 加于더욱이 : 「더욱, 더우기」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는 「더욱(儒, 便), 더욱(典)」으로 읽었으나 이 책에서는 接尾辭 「—이」를 덧붙인 것이 특이하다.

138. 支當不得모질 : 吏文襍例에 보이는 吏讀, 支當은 堪當, 不得은 No. 5. 참조, 전체로는 감당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139. 極爲悶望 : 悶望은 憫望, 憫惘, 憫亡이라고도 적히는데, 전체로는 극히 민망하다는 뜻이다.

140. 爲白去乙ᄒᆞ숩거늘 : 「하옵거늘」에 해당하는 吏讀다.

141. 謀免拒逆 : 謀免은 責任을 벗어나는 일, 拒逆은 命令을 거역하는 일을 뜻하는 漢字語다.

142. 樣以양으로 : 「것처럼, 양으로」를 뜻하는 吏讀, No. 132 참조.

143. 秘密捕捉 : 捕捉은 체포하는 일, 전체로는 비밀히 체포하는 일을 뜻한다.

144. 累朔囚禁 : 여러 달을 囚禁(No. 113 참조)한다는 뜻인 漢字成語다.

145. 爲白乎旀ᄒᆞ숩오며 : 「ᄒᆞ오며」를 뜻하는 吏讀, No. 110 爲乎旀에 謙讓法 接尾辭가 연결된 形態다.

146. 隣里人段置딴두 · 段置는 「을 말하더라도」를 뜻하는 吏讀, 전체로는 「이웃사람을 말하더라도」의 뜻이다.

147. 常爲蔑略 : 蔑略은 멸시하고 침해하는 일, 전체로는 늘 멸시하고 침해한다는 뜻인 漢字成語다.

148. 詈罵惡談 : 漢字成語로서 꾸짖고 저주한다는 뜻이다.

149. 爲去等ᄒᆞ겁든 : No. 75와 중복. 延大本은 「ᄒᆞ거든」인데, 誤寫에 말미암음인 듯.

150. 易亦안으혀對答 : 吏文襍例, 典律通補에 보이는 吏讀다. 易亦은 No. 25와 중복, 讀法이 약간 다르나 表記上의 문제다. 전체로는 쉽게 대답한다는 뜻이다. 延大本의 「안이혀」는 誤寫로 보인다.

151. 爲白在如中ᄒᆞ舍견다히 : 「하온 경우에, 하온 일이라면」의 뜻인 吏讀다.

152. 決不安接 : 安接은 편안히 住居하는 일, 전체로는 결코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다.

153. 爲白昆ᄒᆞ舍ᄲᅳᆫ : 「하오니, 하온데」를 뜻하는 吏讀, No. 95 爲白有昆과 有의 연결로써 구별된다. 이 有는 完了를 나타내는 形態다.

154. 科科分揀 : 分揀은 No. 66과 중복, 科科는 過程마다란 뜻, 전체로는 過程과 條目을 따져서 용서한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典律通補에서는 「ᄎᆞᄎᆞ(--分揀)」로 읽었는데, 차례를 따라 따져서 용서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156. 使得保存 : 보관하도록 하라는 뜻의 句節이다.

157. 爲白良沙ᄒᆞ舍아사 : 「하와야, 하여야」를 뜻하는 吏讀다.

158. 岐如가ᄅᆞ라等狀(3b) : 岐如는 讀法이 약간 다르다 No. 72와 중복, 等狀은 여럿이서 官에 신원하거나 신소하는 일이다. 通文館本의 「가르라」는 잘못 베낀 것인 듯.

159. 始訟原情 : 始訟은 訴訟을 시작하는 일, 元情은 흔히 原情으로 적는데 억울한 事情을 펴서 말하는 일이다.

160. 決得無期 : 法得은 決定하여 처리하는 일. 無期는 期約이 없다는 뜻이다.

161. 曖昧莫甚 : 曖昧는 무고하게 疑心이나 刑罰을 받는 일, 전체로는 애매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뜻이다.

162. 許多卜役진역 : 卜役은 百姓이 지는 賦役, 兵役 등을 가리키는데, 전체로는 허다한 卜役을 뜻한다. 卜役이 「딘역」(便, 儒, 典)으로도 읽히나, 卜數(점수) 등 吏讀의 卜이 「지ㅡ」(負)와 연관되므로 다른 文獻은 口蓋音化를 보여주기 때문에 「디, 지」의 구별이 表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책의 讀法이 오랜 形態를 보인다. No. 50 卜定 참조.

163. 並只다므기擬只시기 : 並只는 「모두, 함께」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의 讀法으로 「다모기(羅, 便), 다무기(儒), 다목기(典)」가 있으나, 中世語의 「다ᄆᆞᆺ」(與), 近代語 初期의 「다므기」(並)로 보아, 이 책의 「다므기」가 더 오

랜 것이고, 다른 讀法은 脣音化된 것이다. 通文館本「다모기」도 그러한 잘못. 擬只는 No. 47과 중복.

164. 役只겨기除良더러 : 典律通補, 羅麗吏讀에 보이는데, 役只는 No. 44, 除良은 No. 40과 각각 중복. 通文館本은 除良의 한글 讀音이 생략. 役只의 免除다.

165. 雜物以로收合 : 以는 造格助詞(No. 101 참조), 전체 뜻은 이런저런 物品으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166. 定日納官 : 정한 날짜에 官衙에 바친다는 뜻이다.

167. 爲有去乙ᄒᆞ잇거늘 :「하여 있거늘」에 해당하는 吏讀, 有는 完了를 표시한다. No. 76, 140 참조.

168. 罰定催促 : 罰을 정하여 어떤 일을 독촉한다는 뜻의 漢字成語다.

169. 乙仍于을지즈루 :「을 말미암아」를 뜻하는 吏讀다.

170. 粗也아야라措備 : 典律通補, 羅麗吏讀에 보이는 吏讀, 粗也는 No. 77과 중복, 전체로는 겨우 마련하였다는 뜻이다.

171. 已爲捧上받자 : 捧上은 No. 41과 중복, 전체의 뜻은 이미 바쳤다는 것이다.

172. 尺文자문受出 : 尺文은 No. 58과 중복, 전체로는 官衙에 納品하고 領收證을 받아냈다는 뜻이다.

173. 爲有在而亦ᄒᆞ잇견마리여 :「하였던 것이지만」에 해당하는 吏讀다.

174. 更生謀計 : 다시 計策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175. 誣訴白活발괄 : 誣訴는 虛僞의 일로써 소송하는 일, 白活은 No. 31 참조.

176. 發明無路 : 發明은 辨明, 전체로는 변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177. 仰不下手 : 羅麗吏讀에서 「앙불하수」로 읽혔는데, 전체의 뜻은 上司를 우럴고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指示만 기다리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는 處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혹, 仰이 바란다는 뜻(뒤의 脚註 16) 참조)이라면 下手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일을 기다린다. 下手는 No. 55 참조.

178. 接足不得 : 接足 곧 발을 들여딛지 못한다는 뜻이다. 不得은 No. 55 참조.

179. 爲有如乎ᄒᆞ잇다온 : 「하였다는, 하였다고 하는데」를 뜻하는 吏讀다.

180. 適音마줌相逢 : 適音은 「마침」에 해당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 「마춤(典, 羅), 마츰(襍, 便), 마참(儒)」으로 읽히는데, 이 책은 中世語의 「마줌(適)」과 같다. 通文館本 「마춤」은 잘못. 전체의 뜻은 마침 서로 만났다는 것이다.

181. 不意追逐 : 전체의 뜻은 뜻밖에 서로 왕래하며 교제한다는 것이다.

182. 頭髮扶曳 : 머리털을 잡아 끌고 당긴다는 뜻이다.

183. 滿庭周揮(4a) : 庭은 고을의 正廳을 가리키는데, 전체의 뜻은 온 正廳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다.

184. 軍令決杖 : 軍令에 따라서 杖刑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決杖은 No. 70 참조.

185. 僅得解放 : 간신히 釋放되었다는 뜻이다. No. 181부터서는 모두 漢字成語다.

186. 爲有去乙ᄒᆞ잇거늘 : No. 167과 중복.

187. 誣餙欺罔 : 誣餙은 거짓으로 꾸미는 일, 欺罔은 속이는 일이다.

188. 萬般侵勞 : 온갖 일로 침범하여 괴롭히는 일이다. No. 129 萬端侵責과 비슷한 漢字成語다.

189. 別乎벼롬督徵 : 別乎는 No. 34와 중복, 督徵은 독촉하여 징발하는 일, 전체의 뜻은 일정한 比率로 배당하여 督徵한다는 것이다. 通文館本 「별롬」은 잘못.

190. 爲巴只ᄒᆞ도록 : 「하도록」에 해당하는 吏讀다.

191. 揚臂戟目 : 팔을 들고 눈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협박한다는 뜻이다.

192. 恃其頑惡 : 頑惡은 모질고 악한 일, 전체로는 제 모질고 악함에 의지하여 덤빈다는 뜻이다.

193. 威力據奪 : 據奪은 차지하고 빼앗는 일, 전체의 뜻은 威力으로 남의 財

産을 강탈한다는 것이다.

194. 任意私用 : 公共의 財産을 멋대로 私用한다는 뜻이다.

195. 延拖不納 : 延拖는 핑계를 대어 延期하는 일, 전체로는 핑계를 대어 時日을 끌면서 納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No. 191부터 여기까지는 犯法에 관한 漢字成語들이다.

196. 尤于더욱過甚 : 典律通補, 吏讀便覽에 그대로 나타나며, 羅麗吏讀에는 加于過甚으로 나타나는 吏讀다. 尤于는 No. 137 加于와 같은 뜻의 吏讀, 그러나, 讀法을 보면 尤于는 「더욱」의 뜻으로만 사용된 듯하다. 延大本 「더욱」은 잘못 베낀 것이다. 過甚은 원래 지나치게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나, 여기서는 괘씸하다는 말이다.

197. 爲白齊ᄒᆞ옴져 : No. 80과 중복.

198. 況旀ᄒᆞ믈며 : 「하물며」에 해당하는 吏讀다. 다른 文獻에서는 「ᄒᆞ물며(儒), ᄒᆞ몰며(典)」 등으로 脣音化를 보인 讀法으로 나타난다. 通文館本 「ᄒᆞ몰며」도 그러한 잘못.

199. 當番臨迫 : 當番은 宿直의 차례에 당하는 일, 전체로는 宿直의 順番에 다달다는 뜻이다.

200. 悶望無際 : 悶望은 No. 139 참조, 전체의 뜻은 민망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201. 流離紘如시우러 : 流離는 定處없이 떠도는 일, 紘如는 No. 42와 중복, 전체의 뜻은 住民이 定處없이 분산된 까닭이라는 것이다. 典律通補에도 보이는 吏讀다.

202. 安接不得모질 : 安接은 No. 152, 不得은 No. 55 참조. 편안히 자리잡고 못 산다는 뜻이다.

203. 爲白去乎ᄒᆞ옴거온 : 「하옵는데, 하온 것이니」를 뜻하는 吏讀다. No. 179 참조.

204. 一時推閱 : 一時에 審問한다는 뜻이다.

205. 的實爲白去等ᄒᆞ옴겉든 : 的實은 틀림없다는 말, 爲白去等은 「하옵거든」

을 뜻하는 吏讀인데, 그 讀法에 대하여는 No. 75 爲去等을 참조할 것이다.

206. 勿侵事乙, : 전체의 뜻은 「侵犯하지 말 일을」이다. 對格助詞 乙의 讀法에 주의할 것, 造格助詞 以가 「로(No. 79, 165), 으로(No. 90, 101, 142)」로 읽히는 것과 同軌다.

207. 分揀解悶 : 分揀은 No. 66 참조, 解悶은 속타는 일이 풀린다는 뜻, 전체의 뜻은 容恕를 받아서 속타는 일이 풀렸다는 것이다.

208. 是白在如中이舍견다히 : 「이옵던 터에, 이었아온 일이라면」을 뜻하는 吏讀, 延大本의 「이쌀견다히」는 잘못 베낀 것이다. (No. 151 爲白在如中 참조)

209. 使無民寃 : 民寃 곧 百姓의 억울함이 없게 한다는 뜻의 句節이다.

210. 爲白乎去ᄒᆞ(4b)舍올가 : 「하온가, 하올까」를 뜻하는 吏讀, 近代語의 資料에서 爲白乎乙去(亂中雜錄)로 나타난다.

211. 望良白去乎ᄇᆞ라舍거온 : 「바라옵는데, 바라옵기에」를 뜻하는 吏讀, No. 179, 203 참조.

212. 參商行下 : 參商은 참작하는 일, 전체의 뜻은 참작하여 내린 指示나 命令, 行下는 No. 10 참조.

213. 敎矣이샤ᄃᆡ : 「이시기를, 이시기에」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 「이ᄉᆞ되(儒), 이시되(典), 이사되(羅), 이되(便)」 등으로 읽히고 있으나, 中世語의 「—시—」의 交替와 吏讀 敎의 用法(No. 21, 30 참조)에 비추어서 이 책의 讀法이 더 오랜 것이다.

214. 唯只아직 : 「오직」에 해당하는 吏讀, 이 讀音은 儒胥必知와 吏文樣例에 보이나 다른 文獻에서는 「아딕(便), 오직(典, 羅)」으로 나타난다. 中世語로 보면 「아직, 오직」의 두 讀法이 가능하나, 전자는(No. 28) 先可와 同音語가 된다.

215. 怨悶辭緣段ᄯᅡᆫ은 : 段은 主題를 표시하는 助詞(No. 2, 4, 146 참조), 보통 「ᄯᅡᆫ」(No. 146 참조), 단(便)」으로 읽힌다. 여기의 讀法은 특이한데, 主題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뜻은 「원통하고 애타는 內容으로 말하면」이다.

216. 根脚不知 : 根脚 곧 그 사람, 보통 罪囚의 姓名, 出身, 住所, 父祖와 外祖를 모른다는 뜻이다.

217. 不干之人乙乙 : 「관련없는 사람을」에 해당하는 句節, 乙의 讀法은 No. 206 참조.

218. 一族之役 : 한 사람이 질 役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親族이 대신 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

219. 無數被侵 : 무수하게 侵害를 당한다는 뜻이다.

위 No. 216부터 계속하여 No. 328까지 이 책의 內容은 漢字成語의 羅列로써 이루어져 있다. 간혹 吏讀가 있으나, 앞뒤 漢字成語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句節을 이루는 것들이다. 여기서 이 책 性格의 一面을 엿보게 된다.

220. 其等徒저드내根派 : 其等徒는 No. 73과 중복, 根派는 집안과 黨派 관계를 뜻한다.

221. 詳細査覈 : 자세하게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222. 曾呈立案幷以아오로 : 「이미 제출한 立案과 함께」를 뜻하는 句節, 立案은 成立文案의 준말로서 官衙에서 어떤 事實을 인증한 文書,[13] 幷以는 No. 88과 중복되는 吏讀다.

223. 退伊를리相考 : No. 106과 중복.

224. 不干與否 : 관여하지 않음의 事實 與否를 가리키는 말이다.

225. 切隣色掌 : 切隣은 가까운 이웃인데, No. 87 참조. 色掌은 事務擔當者를 말한다.

226. 推閱逃亡 : 逃亡한 것을 검사한다는 뜻이다.

227. 物故公文 : 物故는 罪囚를 조사하다가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데, 전체의 뜻은 物故의 經緯를 적은 公文書를 말한다.

228. 追于조초現納 : 羅麗吏讀에도 보이는 것인데, 追加로 납부하는 일을 뜻한다. 追于는 No. 33 참조.

13) 立案은 明立文案의 준말로 볼 수도 있으나, 經國大典註解後集에 다음과 같이 註釋이 있으므로 成立文案의 준말로 본 것이다.
立案一卽文憑也 言成立文案也(下 65a)

229. 潛隱充定 : 潛隱은 役을 피하여 숨는 일, 充定은 그 자리를 보충하는 일을 가리킨다.

230. 暗受立案乙良으란 : 暗受는 暗計를 써서 받는 일, 立案은 No. 222 참조, 乙良은 「을안」으로 적혔으나 No. 112와 같은 吏讀다. 전체의 뜻은 「暗受한 立案을랑, 또는 그 立案으로 말하면」이다.

231. 取納交周爲白遣ᄒᆞ숍고 : 交周는 文字를 말소하는 일, 爲白遣는 No. 82와 중복. 전체의 뜻은 「(文書를) 받아들여 말소하옵고」를 가리킨다.

232. 今後乙良으란 : 「앞으로는」의 뜻이다. 乙良은 No. 112 참조.

233. 一切勿侵 : 절대로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234. 使之安接 : 편안하게 살게 한다는 뜻이다. No. 152 決不安接, 202 安接不得과 상대되는 말이다.

235. 萬蒙天恩 : 天恩 곧 임금의 恩惠를 수없이 입는다는 뜻이다.

236. 爲白在如(5a)中ᄒᆞ숍건다히 : No. 151과 중복, 讀音의 「건」은 「견」의 誤刻이다.

237. 苦務殘民 : 苦務 곧 괴로운 義務를 피폐해진 百姓을 가리키는 말이다.

238. 番價整齊 : 番價는 身役 대신에 징수하는 稅金, 番布라고도 한다. 전체는 番價를 정확히 한다는 뜻이다.

239. 都目牌字 : 都目은 都目政事의 준말, 牌字는 牌子, 牌旨라고도 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書面이다. 전체의 뜻은 6, 12월의 定期的인 人事內容을 알리는 文書를 가리키는 말이다.

240. 蝙蝠之役 : 이른바 박쥐 구실로서, 반복무상한 일을 뜻한다.

241. 都將發遣 : 都將 곧 우두머리 將校를 파견하는 일을 말한다.

242. 勦捕堅囚 : 도둑을 토벌하여 사로잡아서 굳게 잡아가둔다는 뜻이다.

243. 衙門請托 : 官衙에 請托을 하는 일.

244. 毆訴呈狀 : 남을 비방하는 訴狀을 제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245. 百般稱頃 : 百般으로 핑계를 대어서 면하려고 하는 일.

246. 欲免其役 : 제게 부과된 役을 면하려고 하는 일을 뜻한다.

247. 逢點時 公然不現 : 點考할 때를 당하여 공연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248. 罪不可掩 : 罪를 숨길 수 없다는 말이다.

249. 泛濫莫甚爲白乎矣ᄒᆞ옴오더 : 「외람되기 막심하오되」란 뜻이다. 爲白乎矣는 No. 130 爲乎矣의 恭遜法形態다.

250. 終時發明 : 끝내 發明 곧 변명한다는 말이다.

251. 其惡不測 : 그 奸惡함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252. 如比奸滑之人乙옳 : 전체의 뜻은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을」이다.

253. 不爲重治 : 무겁게 罪를 다스리지 않음을 뜻한다.

254. 後弊難防叱分不喩 : 뒤의 弊端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의 뜻이다. 叱叙不喩는 No. 35 毋不喩와 같은 吏讀, 通文館本은 口蓋音化된 「뿐안지」란 한글 夾註가 있다. 다른 文獻에서는 「分叱不喩(儒, 典, 羅), 叙不喩(便)」로도 표기된다. 吏讀文書를 보면 원래 叱分不喩로 쓰이다가 近代에 들면서 分叱不喩도 사용된다. 이 점에서도 이 책이 傳統的인 吏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55. 每欲冒頓 : 冒頓은 핑계를 대어 빠지는 일, 전체의 뜻은 매번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256. 不無其責 : 그 責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257. 着枷項鎖足鎖 : 重罪囚에게 도망을 못가게 가하는 裝置들이다. 着枷는 목에 칼을 씌우는 일, 項鎖는 칼을 씌우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足鎖는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그는 일이다. 項鎖足鎖는 羅麗吏讀에 그대로 나타난다.

258. 從重決杖 : 從重은 여러 罪目에서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한다는 從重論의 준말, 決杖은 No. 70 참조, 전체의 뜻은 從重論으로 杖刑을 집행하는 일이다.

259. 使無後弊爲白乎旀ᄒᆞ옴며 : 뒤의 弊端을 없이한다는 일을 뜻한다. 爲白乎旀는 No. 145와 중복.

260. 欺罔官員 : 官員을 속인다는 뜻이다.

261. 謀弄呈狀 : 일을 꾸며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 呈狀은 No. 244 참조.

262. 僞造文記 : No. 118과 중복.

263. 印後加書 : 중요한 文書의 끝 부분을 印이라 하고 「矢」(便)이라 읽는다. 따라서 文書의 끝이 印이나, 文書作成이 끝났다는 뜻도 된다. 여기는 후자의 뜻으로, 완결된 文書에 다시 더 써넣는다는 뜻이다. 印上加書와 같은 말이다.

264. 飛(5b)褙洗濯 : No. 263과 함께 文書의 變造를 뜻하는 말인데, 詞訟類聚(聽訟式)의 「文記塗擦·印後加書」와 같다. 大明律直解(戶律七, 倉庫 鈔法)에서 文書變造를 뜻하는, 原文의 「挑剜描輳」를 「洗補爲旀 卑背加書」라 한 것도 같은 말이다. 따라서 飛褙洗濯은 文書의 글자를 개칠하거나 씻어버리는 일을 뜻한다.[14]

265. 壓良爲賤 : No. 117과 중복

266. 官行爲私 : 官衙의 일로써 私利를 위한다는 뜻이다.

267. 謀術奸謀 : 謀略과 간교한 計策을 뜻하는 말이다.

268. 凌慢作亂 : 凌慢은 No. 125 참조. 官員이나 長上을 능멸하여 紛亂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269. 謀陷誣訴 : 무고하게 남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일을 뜻한다.

270. 橫行收斂 : 마구 百姓의 財物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271. 侵民取利之物乙良으란 : 百姓을 침해하여 私利를 본 物件을 가리킨다. 乙良은 No. 112 참조.

272. 不分是非 : 是非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

273. 盡爲屬公 : 모두 몰수하여 公有로 한다는 뜻이다.

274. 以懲其濫是白乎旀이슘오며 : 그 濫法을 징계할 것이라는 뜻, 是白乎旀는 No. 145 참조.

275. 前頭良中아히 : 吏讀便覽에 보이는 吏讀, 前頭는 장래, 來頭와 같은 말, 良中은 處格助詞, No. 52 참조.

14) 이 解釋은 현재 奎章閣圖書管理室의 古文書整理委員인 權亮燮씨에 의한다. 氏에 의하면 과거 書堂에서 잘못 쓴 글자를 고칠 경우에는, 아래위에 종이를 대고 물방울을 떨어뜨려 글자를 없앤 다음에 다시 썼다고 하며, 그것이 바로 飛褙洗濯이라고 한다.

276. 矣身의몸茂火더브러 : 吏文襍例, 典律通補, 羅麗吏讀, 吏讀便覽에 나타나는데, 矣身은 自身을 가리키는 말, No. 24 참조. 茂火는「더부러, 함께」를 뜻하는 吏讀, 다른 文獻에서는「더블어(襍), 더부러(便), 지북너(儒)」등으로 읽히는데, 이 책의 讀法表記가 전통적인 것이다. 儒胥必知는 訛傳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277. 一應刷馬雜役 : 一應은 一切, 刷馬는 吏讀便覽(行用使文)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고을에서 삯을 내고 官用으로 징발한 말, 雜役은 科外의 잡다한 使役을 뜻한다.

278. 推刷監考 : 推刷는 어떤 일이나 帳簿를 검사하여 일이나 物件을 찾아내거나 資金을 회수하는 일, 監考는 감독하는 일, 전체의 뜻은 推刷의 監督이다.

279. 捕盜部將 : 捕盜廳에 소속하여 도둑을 잡는 捕校의 別稱이다.

280. 勸農 : 面所任의 이름.

281. 陷穽守直 : 陷穽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282. 擬只시기是沙餘良이산나마 : 擬只는 No. 47과 중복, 是沙餘良은「일 뿐 아니라」를 뜻하는 吏讀다. No. 134 爲白沙餘는 끝에 良을 줄인 점과 讀法「ᄒᆞ숣사나마」가 약간 다르나, 沙餘良란 語尾를 갖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전체의 뜻은「시키는 일, 또는 執行하는 일일 뿐 아니라」에 해당된다.

283. 鄕所座首別監 : 고을의 士族出身으로 구성된 鄕所의 일을 보는 職任을 가리킨다.

284. 將官丘從使令 : 將官은 將校, 丘從은 騶從과 같은데 官員을 옹위하는 下人, 使令은 官衙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85. 羅將吹手 : 羅將은 고을 使令의 일종, 吹手는 樂器를 다루는 軍卒이다.

286. 軍器庫直 : 軍器를 보관하는 倉庫를 지키는 所任을 가리킨다.

287. 伺候別定 : 伺候는 上官의 命令을 대기하는 일, 別定은 특별한 任務에 차출되는 일을 가리킨다.

288. 色吏押領 : 色吏는 고을이나 監營의 吏員, 押領은 데리고 가는 일을 뜻

한다.

289. 罪人拿去 : 罪人을 체포하여 가는 일을 뜻한다.

290. 移文到付 : 移文은 No. 62와 중복, 전체의 뜻은 조회하는 公文이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291. 關字成給(6a)爲有置ᄒᆞ잇두 : 關字는 No. 11 참조, 成給은 公文을 만들어 주는 일, 爲有置는 「하였다, 하였으니」에 해당하는 吏讀, 전체의 뜻은 關字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292. 用術書員 : No. 120과 중복.

293. 頑惡鄕吏是置이두 : 頑惡鄕吏는 No. 121과 중복, 是置는 「이라, 이라도」에 해당하는 吏讀다.

294. 自權文書 : 제 任意로 만든 文書란 뜻이다.

295. 身致富足 : 一身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296. 此必侵民作弊 : 이는 반드시 百姓을 침해하고 弊端을 일으켰다는 뜻의 句節이다.

297. 百般謀勅收斂 : 百般으로 謀策을 부려 거두어들인다는 뜻의 句節이다.

298. 以爲己物 : (거두어들인 物件을)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299. 甘當重治 : 중한 治罪도 감수한다는 뜻이다.

300. 仕官出干 : 出干은 나아가 관여한다는 것, 전체의 뜻은 官職에 있으면서 관여한다는 것이다. 羅麗吏讀에도 보이는 예다.

301. 粘連呈狀 : 粘連은 어떤 文書에 관련되는 文書를 첨부하는 일, 전체의 뜻은 관련 文書를 첨부하여 文書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No. 63 粘移 참조.

302. 論罪除良더러 : 「論罪를 않고」의 뜻이다. 延大本 「더려」는 잘못, 除良은 No. 40 참조.

303. 已爲決折 : 羅麗吏讀에도 보이는데, 決折은 決斷 또는 判決, 전체는 이미 決斷이 되었다는 뜻이다.

304. 更良가서야訟事 : 다시 소송하는 일을 뜻한다. 更良은 No. 56과 중복.

305. 眞僞現捉 : 眞僞의 證據를 잡았다는 뜻이다.

306. 更推決尾 : 更推는 다시 조사하는 일, 전체의 뜻은 再調査로써 結末을 짓는다는 것이다.

307. 交易放賣 : 交易은 交換, 전체의 뜻은 交換하여 팔았다는 것이다.

308. 逃躲闕失 : 逃躲(도타)는 逃避, 闕失은 紛失, 전체의 뜻은 사람은 도망하고 물건은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309. 差役歇役 : 差役은 軍役 등을 부과시키는 일, 歇役은 空歇軍役의 준말로서 役을 고의로 벗어나게 하는 일을 가리킨다.

310. 成川浦落 : 成川은 냇가의 田地가 洪水로 내가 되는 일, 浦落은 그 한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일, 전체의 뜻은 田地의 流失을 가리킨다. 이 말은 줄여서 浦落이라고 하는데 川反浦落과 같다. 浦落은 「개락」으로 읽힌다. 重刊警民編의 다음 例文이 그것을 말한다.

두어이럼 뎐디 잇다감 쳔번개락ᄒᆞ야(數畝田地 有時而川反浦落 6b)

311. 違法決給 : 違格決給과 같은 말로서 法에 어긋나게 판결하여 주었다는 뜻이다.

312. 重記磨勘 : 重記는 官廳의 財物을 일정한 期間마다 점검하여 기재한 文簿로서, 官吏가 사무를 인계할 때 넘겨주는 것, 전체는 (인계하여 줄) 官廳의 財物에 관한 文書와 帳簿를 완결하였다는 뜻이다.

313. 頒赦行移 : 頒赦는 나라에서 大赦令을 내리는 일, 전체의 뜻은 赦免을 내린다는 公文을 가리킨다.

314. 宥旨箋文 : 宥旨는 頒赦의 王命, 箋文은 원래 王에게 올리는 특정한 文體의 글이나 여기서는 文書와 같은 뜻, 전체는 頒赦의 王命을 담은 文書를 가리킨다.

315. 如前待候 : 待候는 No. 289 伺候와 같으니, 여전히 上官의 命令을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316. 歐打叱辱 : 때리고 꾸짖는다는 말.

317. 亂打結縛 : 마구 때리고 결박한다는 말이다.

318. 皆是迷劣 : 모두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319. 一應風損旱災 : 모든 風害와 旱害를 가리킨다. 一應은 No. 277 참조.

320. 大倘同倘 : 倘은 黨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同倘, 伴倘, 成倘, 惡倘」(大明律直解)과 같이 모두 나쁜 무리를 가리킨다. 大倘은 큰 도둑의 集團, 同倘은 같은 도둑떼란 뜻이다.

321. 盡力搜括 : 진력하여 수색하고 찾아낸다는 뜻이다.

322. 乘夜突(6b)入 : 남의 집에 밤을 타서 돌입한다는 말로서, No. 16 夜間突入과 같은 뜻이다.

323. 衝火煨燼 : 불을 질러 태워버린다는 말이다.

324. 恐其反坐 : 反坐는 남을 무고한 사람에게, 그 허위로 고발한 罪와 꼭같은 罪를 주는 일, 전체의 뜻은 反坐가 두려워서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25. 構成虛事 : 허무맹랑한 일을 얽어 만든다는 말이다.

326. 暗然還放 : 罪囚를 몰래 놓아준다는 뜻이다.

327. 知非誤決 :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릇 판결한다는 말이다.

328. 姑此書塡 : 公文의 마지막에 쓰는 套語로서, 우선 이만 쓴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110여 項目에 걸쳐 漢字成語를 풀이하였는데, 이들은 각기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文書에서 가려뽑은 것으로 보이는 項目의 連續을 보인다. 項目 사이에 나타나는 意味의 連續性은 저 앞의 다른 項目에서도 없지 않으나, 위의 No. 214~238, 245~259, 260~274, 292~303에서 뚜렷이 보인다. 이 책이 吏讀뿐 아니라 文書를 가르치려는 意圖에서 만들어졌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書에는 吏讀가 많이 나타난다. No. 329부터서는 다시 吏讀만을 나열하고 讀法을 보이게 된다.

329. 爲白臥乎事ᄒᆞ옴누온일 : 儒胥必知에 그대로 보이는 吏讀, 「하옵는 일」에 해당한다. No. 136 爲白臥乎所 참조.

330. 爲白臥乎味ᄒᆞ옴누온맛 : 「하옵는 뜻」에 해당하는 吏讀다. 味는 「말」 또는 「뜻」(旨)을 나타내는데, 鄕歌의 「辭叱」(祭亡妹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331. 爲白乎在亦ᄒᆞ옴온견이여 : 儒胥必知에도 보이는데, 「하온 것인데, 하온 것이지만」을 뜻하는 吏讀다.

332. 是白乎味이ᄉᆞᆷ온맛 : 吏讀便覽, 儒胥必知에도 보이는데, 「이온 뜻」에 해당한다. No. 330이 動詞이나, 이 項目은 繫辭다.

333. 敎是在如中이시견다히 : 「하신 경우에, 하신 일이라면」을 뜻하는데, 儒胥必知에도 나타난다. No. 151 爲白在如中 참조.

334. 的只臥乎事마기누온일 : 「확실한 일, 맞는 일」을 뜻하는 吏讀, 吏讀便覽에도 꼭같이 나타난다. No. 48 的只 참조.

335. 爲白乎追于ᄒᆞᆷ온조초 : 「하온 대로 따라」에 해당하는 吏讀, No. 91 爲乎追于 참조.

336. 爲白乎喩良置ᄒᆞᆷ온디라두 : 「하온 것이라도, 하올지라도」를 뜻한다. 延大本의 「ᄒᆞᆷ오디라두」는 잘못인 듯하다. No. 109 爲白乎喩 참조.

337. 是白有亦이ᄉᆞᆷ이시니여 : 「이었사오나, 이었사오므로」를 뜻한다. 儒胥必知의 「이ᄉᆞᆷ이신이여」는 같은 讀法을 보인 것, 延大本 「이ᄉᆞᆷ이시이여」는 잘못 베낀 것.

338. 敎是臥乎在亦이시누온견이여 : 「하시는 것인데, 하시는 것이지만」을 뜻한다. 다른 文獻도 같은 讀法(儒, 典)이거나 비슷한 「이신누온견이여, 이샨누온견이여」(樣)를 보인다. 敎是(No. 30)로 미루어서 이 책의 讀法이 일관성이 있다. (No. 331, 333 참조)

339. 爲臥乎等以用良ᄒᆞ누온들뼈 : 「하는 것으로써」에 해당하는 吏讀다. 大明律直解에 爲臥乎等用良으로 나타나고, 吏讀 用良이 對格을 지배하여 乙用良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以는 잘못 삽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讀法에 「로」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儒胥必知에서는 「ᄒᆞ누온들로써라」로 읽혔으므로[15] 近代에는 以도 연결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40. 爲白(7a)乎亦中ᄒᆞᆷ온여희 : 「하온 경우에」에 해당한다. 延大本의 「여히」는 中의 전통적 讀法이지만, 筆寫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41. 敎味白齊이샨맛ᄉᆞᆷ져 : 「하신 뜻을 사뢰다」를 뜻한다. 延大本 「이샨맛」

15) 儒胥必知에는 爲臥等以用良으로 되어 있다. 讀法의 「온」으로써 乎의 脫字가 추정된다. 실지로 이 吏讀가 七字類에 배열된 것은 그 推定을 뒷받침한다.

은 잘못 베낀 것이다. 다른 文獻에 「이샨맛숣져(襘, 典), 이산숣져(儒)」로 읽히는데, 敎의 讀法(No. 21 참조)에 비추어 이 책이 전통적인 것이다.

342. 是白良尒이숣아금 : 「이온즉, 이옵도록」을 뜻한다. 儒胥必知에도 나타난다.

343. 望白良尒ᄇᆞ라숣아금 : 「바라옵건대, 바라옵기를」을 뜻한다. 다른 讀法인 「바라올아금(儒), ᄇᆞ라옳아금(便)」은 近代語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ᄇᆞ라」가 望으로 대응된 것은 No. 211 望良白去乎에 비추어서 良의 생략이라 하겠다. 이는 「나마」가 餘(No. 134 참조)와 餘良(No. 282 참조)으로 된 것과 같다.

344. 使內白如乎ᄇᆞ리숣다온 : 使內는 中世語의 「브리—」(使)에 해당하는데, 「행하—, 조처하—」를 뜻한다. 따라서 전체의 뜻은 「행하옵던, 행하옵더니」다. 讀法은 「브리숣다온」(襘)이 中世語에 가까우나, 「바리숣다온」(儒)이 있으므로 이 책이 더 오랜 것인지도 모른다.

345. 使內事ᄇᆞ리온일 : 「행한 일, 조치한 일」을 뜻한다. 다른 文獻에서는 「바리온일(儒), 부리온일(典), ᄇᆞ라온일(便)」로 읽혀진다. 通文館本 「ᄇᆞ라온일」도 그러한 잘못이다.

346. 爲白良沙ᄒᆞ숣아사 : No. 157과 중복.

347. 是良尒이아금 : 「인즉, 이도록」을 뜻한다. No. 342 참조. 다른 文獻(襘, 儒, 典, 便)에서도 꼭같이 나타난다.

348. 爲白乎第亦中ᄒᆞ숣온뎨여희 : 「하온(하올) 적에」에 해당하는 吏讀, No. 340 참조. 「ᄒᆞ숣제여히」(儒)라고 읽히기도 하나, 「온」이 빠졌고 또 口蓋音化를 입은 讀法이다.

349. 無不多어오론안들 : 二重否定으로서 「없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 無의 讀法은 「업스론안들」(襘, 儒)과 같이 「업스론」으로도 나타난다. 「없—」(無)과의 有緣性으로는 「업스론」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나, 「어오론」이 다른 곳에도(No. 352, 353 참조) 나타나므로 속단할 수는 없다.

350. 爲乎乙所ᄒᆞ올배 : 「하올 바」에 해당하는 吏讀다. 所가 主格格으로 읽히

는 것은 No. 78 참조.

351. 支只과글이 : 弋只와 혼동되어 主格助詞로도 사용되나, 여기 예는 「급하게」를 뜻하는 副詞로 쓰인 것이다. 다른 文獻에 「과그리(便), 과글니(儒, 典), 과걸리(羅), 과거리(裸, 儒)」 등으로 읽히는데, 이 책은 中世語 「과글이」와 같다.

352. 無亦어오론견이여 : 「없이」에 해당하는 吏讀, 讀法에 「업스론견이여(裸, 儒), 어오어여(儒)」가 있다. No. 349 참조.

353. 無乎事어오론일 : 「없는 일」을 뜻한다. 讀法에 「업스온일(儒), 업ᄉᆞ온일(裸), 무온일(便), 어오로일업다(典)」 등이 있다. 여기에서 「무온일」은 吏讀를 音讀한 것이거나 誤字이므로 제외하면, 無가 「어올—, 없—」의 두 가지로 읽힌 것이다. No. 349 참조.

354. 爲良置ᄒᆞ야두 : 「하여도」에 해당하는 吏讀, 儒胥必知에도 보인다.

355. 及良미처 : 「미쳐」에 해당한다. 延大本의 「미처」는 잘못 베낀 것, 다른 文獻에 「미처(裸), 미쳐(儒), 밋쳐(羅, 典), 밋아(便)」로 읽혔는데, 잘못(밋아)이거나 近代語의 영향(미쳐, 밋쳐)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356. 右良니믜여 : 「앞에 말한 바와 같이」를 뜻한다. 「니믜야(裸), 님의여(儒, 典), 니ᄆᆞ아(便)」 등 讀法이 있는데, 이 책이 「니믜야」와 함께 오랜 모습을 보여준다. 通文館本은 「이믜여」다. 이와 같이 通文館本은 口蓋音化를 보여준다.

357. 進叱낫드러 : 「나아가서」를 뜻한다. 이 讀法은 딴 곳(裸, 儒, 典)에도 보인다.

358. 是去是良尒이거이아금 : 「인 것인즉」을 뜻한다. 다른 文獻(裸, 儒)에도 나타난다. No. 347 是良尒 참조.

359. 是去有(7b)等以이거이온들로 : 「인 것 때문에」를 뜻한다. 다른 文獻에 「이거이신들로」(裸, 儒)로 읽혀 있는데, 이 책의 「온」은 「신」의 잘못이라 생각된다. 有가 「이온」으로는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360. 是乎味이온맛 : 「이온 뜻」에 해당한다. 다른 곳(儒, 典)에도 나타난다.

361. 是阝去向入인가앗드려 : 「인가 생각하여」를 뜻한다. 通文館本은 「인가앗드려」. 向入은 이 책에서도 「앗드려」(No. 54)로 적히나, 延大本의 「앗드려」는 잘못 베낀 것이다. 다른 文獻에서는 「인가앗드려(儒), 이가잇드려(便)」로 읽히는데, 후자는 잘못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阝은 隱의 略字로 口訣表記에 주로 나타나나 吏讀에도 사용된다. 이 吏讀가 是隱去向入(儒, 便)으로 표기될 뿐 아니라, 是隱喩(No. 371 爲隱喩 참조)가 是阝喩(襍)로 표기됨이 그 증거다.

362. 爲等如ᄒᆞ트려 : No. 71과 중복.

363. 爲良結ᄒᆞ야감 : 「하고자, 하게끔」에 해당된다. 吏文襍例에는 꼭같이 나타나나, 다른 곳에서 「爲良結ᄒᆞ아져(便), 爲良結ᄒᆞ올아져, 爲良納ᄒᆞ야감(儒)」으로 되어 있고, 또 爲白良結(No. 94)의 讀法에 비추어서 이 項目의 結이 納의 誤字가 아니면 讀法 「감」이 「져」의 誤字라는 見解(홍 순혁 1949 : 18)가 있다. 그러나 吏讀에서 한 글자가 반드시 한 가지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므로 성급한 斷定은 삼가야 할 것이다. 뒷날의 課題로 남겨 둔다.

364. 新反새로이 : 「새려, 커녕」을 뜻한다. 다른 文獻에서도 같거나(襍, 便), 「서로이」(典) 등으로 비슷하게 읽힌다.

365. 題音더김 : 通文館本 「데김」, 百姓이 제출한 訴狀 등에 官廳에서 써주는 判決 또는 指令의 글을 가리킨다. 다른 文獻에 「데김(便), 져김(典), 제김(儒)」으로 읽혔는데, 中世語가 「데김」이므로 이 책의 讀法도 오랜 것이라 하겠다.

366. 爲白良喩ᄒᆞ숍아디 : 「하온지」에 해당된다. 다른 文獻에서는 「ᄒᆞ숍알지(襍, 儒), ᄒᆞ숍안지(儒)」로 읽힌다. 喩가 冠形形에 연결되는 점으로 말미암은 讀法이다.

367. 貌如使內良如敎즛다ᄇᆞ리다이샨 : 「같이 행(조처)하라고 하신」을 뜻한다. 貌如는 皃如(養蠶經驗撮要)로도 적는데, 「같이」에 해당하는 副詞다. 다른 文獻에서 「즛다브리다이샨(襍), 즛바리다이샨, 즛다부리다이사(儒), 즛다ᄇᆞ라아이샨(便)」 등으로 읽히나, 이 책과 吏文襍例의 讀法이 정통적이라고 생각

된다.

368. 岐等如使內如乎가로려ᄇᆞ리다온 : 「분리하여 행(조처)하면 또는 하더니」를 뜻한다. 岐等如는 岐如(No. 72, 158)와 같으나 等이 더 있다. 使內如乎는 No. 344 참조. 다른 文獻에서는 「가로려브리다온(襘, 儒), 가로려ᄇᆞ리다온(儒)」이다.

369. 除除良더더러 : 「더러는, 一部는」을 뜻한다. 除良(No. 40, 164, 302)과는 用法이 다르다. 다른 文獻(襘, 儒)에도 꼭같이 나타난다.

370. 爲隱所ᄒᆞᆫ바 : 「한 바」에 해당한다. 所가 「바」로 읽힘에 주의할 것이다. No. 78 참조. 儒胥必知에서는 ᄒᆞᆷ所로 적히는데, 첫 자의 了는 阝의 잘못이 아닐까 한다. No. 361 참조.

371. 爲隱喩ᄒᆞᆫ디 : 「한지」에 해당한다. 다른 文獻에서는 이 책과 같거나(典), 口蓋音化된 「ᄒᆞᆫ지」(儒)의 讀法을 보인다. 儒胥必知에는 ᄒᆞᆷ喩로 나타나는데, 역시 了는 阝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372. 節디위 : 「때, 이 때」를 뜻한다. 다른 文獻에서도 「디위(羅, 典, 便), 지위(襘, 儒)」로 읽혔다. 후자는 口蓋音化된 것이다.

373. 各人等招辭是置有亦이두이시니여 : 招辭는 供辭, 곧 罪人의 陳述, 是置有亦은 「이라고 하여서」를 뜻한다. 是置는 No. 293, 有亦은 No. 98 참조. 전체의 뜻은 「罪人 각각의 陳述이라 하여서」다.

374. 同參的只乎事마기온일 : 的只乎事은 儒胥必知에도 꼭같이 나타나는데, 「확실한 일」을 뜻한다. No. 334 참조. 전체의 뜻은 함께 참여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375. 白是ᄉᆞᆯ이 :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올리는 글을 뜻하는 吏讀다. 吏讀便覽(行用吏文)에 그대로 나타나며, 儒胥必知에는 「ᄉᆞᆷ이」라 읽혀 있다.

376. 進賜나ᄋᆞ리 : 「나으리」를 뜻하는데, 다른 文獻에서는 「나아리(儒), 나으리(羅)」로 읽혔다.

377. 向敎是事 : 「(행)하실 일」을 뜻하는 吏讀, 讀法이 없으나 다른 文獻에 「아이샨일(便, 典)」로 되어 있으므로 「아이샨일」로 추정된다. No. 21 참조.

378. 向事아안일(8a) :「(행)할 일」을 뜻한다. 다른 文獻에서도「아안일(羅, 典), 안일(儒)」로 나타난다. No. 377과 함께 이 吏讀는 文書의 結辭로 사용된다.

379. 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某衙門 : 牒呈의 끝에 사용하는 套式, 이미 No. 6~9에 나온 것이나 經國大典의 牒呈式(Ⅲ 禮典, 56a)에 따라 실제 文書와 꼭같이 2행(請에서 1행이 끝남)으로 써 보인 것이다.

380. 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 某衙門 : 關文의 끝에 사용하는 套式, 첫 句節은 No. 11에 나왔으나 經國大典의 平關式(Ⅲ 禮典, 55b)에 따라 실제 文書에서와 같이 2행(請에서 1행이 끝남)으로 써 보인 것이다.

381.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 某人准此 : 帖의 끝에 사용하는 套式, 經國大典의 帖式(Ⅲ 禮典 56b)에 따라 2행(仰에서 1행이 끝남)으로 써 보인 것이다. 帖은 上級官廳에서 七品 이하의 官員, 또는 官廳의 長이 部下官員에게 내리는 文書다. 合下는 文書를 내려보내기에 합당하다는 뜻, 仰은 牒呈의 伏請, 關文의 請과 같이 바란다는 뜻이다.[16] 전체로는「이 文書를 내려보내기에 합당한 것이니 검토하여 시행하기를 바라 모름지기 帖을 보낸다. 이 帖은 某人에게 내려보내니 이를 따르다」로 해석된다.

4. 마 무 리

지금까지 우리는 吏讀文獻인 吏文大師에 대하여 장황한 紹介를 행하여 왔다. 이에 책의 體裁와 形態 및 內容은 분명히 드러났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說明이 단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의 性格과 거기 나타나는 吏讀資料의 價値를 알기 위하여는 설명을 종합하여 結論을 내릴 필요를 느낀다.

이 책은 교육의 得吏가 알아두어야 할 각종 書式, 곧 吏文을 가르치기 위

16) 仰을 우멀다로 잘못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吏文輯覽의 다음 註釋에 따라서 바란다가 옳은 것이다.
仰去聲 猶望也 凡上司移文下司 例用仰字 如咨文中煩請 呈文中伏乞之體文也(Ⅱ, 11a)

하여 편찬된 것이다. 이것은 吏文襍例와 儒胥必知에 공통되는 性格이다. 吏讀에는 한글로 讀音을 표시한 것까지 같다. 다만 吏文襍例와 儒胥必知가 文書의 실례를 보이는 方式으로 편찬된 데 대하여, 이 책은 文書의 첫머리와 結辭의 套式을 보인 뒤에 몇 개의 전형적인 文書에서 중요한 漢字語句와 吏讀를 가려 뽑아 편찬된 것이 다르다. 그런데 이들 책은, 吏讀에만 한글로 讀法을 표시하는 註釋을 갖는 사실과 國語史資料로서의 價値가 그 吏讀에 있는 점에서 吏讀의 學習書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 세 책의 系譜는 어떤 것일까.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儒胥必知에는 吏文襍例가 거의 수록되어 있다. (홍 순혁 1949 : 13) 그러므로 儒胥必知는 吏文襍例를 참고로 하여 편찬된 것이다. 이에 이 책과 吏文襍例와의 관계만 문제로 남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吏文襍例보다 이 책이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理由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책은 漢字語句와 吏讀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등, 책의 體裁가 매우 엉성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잘 편찬된 學習書가 있었다면, 이러한 책이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이 책에 보이는 吏讀의 讀法이 가장 전통적이고 오랜 모습을 띤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이고 오랜 모습이란 中世語 이후의 國語史에 비추어서 판정된 것이다. 이 讀法은 책의 系譜를 밝히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이 책이 갖는 吏讀資料로서의 價値를 말하고 있다.

吏文襍例와 儒胥必知는 물론이고, 典律通補와 吏讀便覽 등 다른 文獻의 讀法에서는 口蓋音化와 脣音化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다담(傣音), 디위(節), 디딜로(秩秩以), 안디(不喩), 니믜여(右良), 믈리(退伊), 다므기(並只), ᄒᆞ믈며(況旀) 등. 또 中世語의 語形을 유지하고 있다. 예, ᄆᆞᄅᆞᆷ(舍音), 받자(棒上), ᄇᆞ라—(望良, 望), 이샤디(敎矣) 등. 여기에서 이들 讀法이 中世語의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進賜가 「나ᄋᆞ리」로 읽혀 ㅿ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그러나 다른 어떤 文獻의 讀法보다도 가장 오랜 모습인 점은 움직일 수 없다.

종래 吏讀文獻에 보이는 讀法에 대한 不信은 상식으로 되어 왔는데,[17] 이 책이 나타남으로써 적어도 그 不信은 씻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이 吏讀, 나아가 國語史의 硏究에 기여함이 있다면, 바로 讀法에 대한 이 情報의 제공이다. 이 책에 나타나는 吏讀와 그 讀法을 발판으로 하여, 앞으로 吏讀硏究가 새롭게, 그리고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參 考 文 獻

小倉進平(1929), 鄕歌及吏讀의 硏究, 서울 : 京城大學.
安秉禧(1975), 古書의 紙背文書에 대하여, 圖書館報(서울大圖書館) 11.
李秉岐(1940), 朝鮮語文學名著 解題, 文章 Ⅱ-8.
李仁榮(1968), 淸芬室書目, 서울 : 寶蓮閣.
장지영·장세경(1976), 이두 사전, 서울 : 정음사.
최현배(1961), 고친한글갈, 서울 : 정음사.
洪淳鐸(1974), 吏讀硏究, 서울 : 光文出版社.
홍순혁(1949), 吏讀文獻 "吏文襍例" 小考, 한글 105.

〔附 記〕

이 글의 校正을 거의 마칠 무렵, 洪淳赫교수가 雜誌 「鄕土」(正音社)에 연재한 「汲古隨錄」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吏文大師를 간단히 소개한 사실이 있음을 尹錫昌교수에게서 듣게 되었다.

2. 吏讀語彙文獻에 對하여(鄕土 3. 1946)
5. 吏文과 吏文大師(鄕土 6. 1947)

洪淳赫교수는 儒胥必知에 대하여 한글 96호(1946)와 99호(1947), 吏文襍例에 대하여 書物同好會會報 17호(1942)와 한글 105호(1949)에 論文을 발표하여 吏讀硏究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鄕土誌가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6호로 폐간되기는 하였으나, 洪교수가 소개한 吏文大師가 널리 그리고 진작 알려지지 못한 일은 여간 애석한 것이 아니다. 筆者도 스스로의 管見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곧 河東鎬교수에게서 그 글을 얻어 보게 되어, 1947년 당시 외솔 최현배선생이 吏文大師의 刊本을 구입 소장하였는데 그 책이 吏文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읽어 알게 되었다. 당시 洪교수와 최현배선생이 각기 刊本인 吏文을 소장한 사실도 밝혀진 것이다. 李仁榮교수의 所藏本(本文 註 7 참조)을 합하면, 吏文은 3책이 있은 셈이다. 洪교수의 所藏本에 대하여는

17) 이러한 不信에 대한 論議는 洪淳鐸(1974 : 2—3)을 참조할 것.

문의할 방도도 없었고, 최현배선생의 책에 대하여는 遺族에게 알아보았으나 現存與否를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實冊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紹介를 洪교수의 글 이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유감스럽지만 그 책들에 관한 것은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解放 직후 延世大學校 史學科에 함께 재직하고 계셨던 閔泳珪교수에게서 洪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洪교수의 吏讀硏究에 대하여 附記로나마 언급하라는 閔교수의 종용을 받게 되었다. 吏文大師를 소개하는 이 글에서 吏文大師에 관한 洪교수의 先功을, 校正段階에서 알았다고 하여 덮어둔다는 것은 더욱 죄송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鄕土誌의 글을 중심으로 하여 吏文大師와 吏文에 대하여 한두 가지 덧붙여 적기로 하는데, 洪교수를 비롯하여 위의 세 분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吏文大師의 외솔本은 四周單邊, 한쪽의 匡郭이 세로 16.5cm, 가로 13.5cm이며 8행, 1행 18자이다. 匡郭의 크기를 말할 경우에 外郭으로써 하는 일이 있으므로, 외솔本은 匡郭이 약간 크나 대체로 가람本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記述에 비추어서 洪교수 소장의 吏文裸例는 東洋文庫所藏本과 같은 刊本인데, 洪淳赫(1942 및 1949)에서 말한 그 匡郭은 筆者가 조사한 東洋文庫所藏本의 外郭인 것이다. 외솔本의 保存狀態는 좋은 편인 듯하여 版心書名이 완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書名이 「吏文大(1), 吏文大士(2), 吏(4), 吏文(3,5~8)」으로 되어 있어서 坊刻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람本의 版心은 마멸되어 이 書名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高大本은 「吏文」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점에서도 외솔本은 高大本과 다른 刊本이다.

吏文과의 關係에 대하여는, 吏文大師가 吏讀에 한하여 한글로 讀法을 보였음에 대하여 吏文이 漢字成語까지 讀法을 보인 것이 다를 뿐이고 內容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吏文大師 계통의 책이 胥吏階層에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吏文이 같은 內容이라면, 그 先後가 문제된다. 洪교수는 刊本의 상태에 의하여, 刊年의 下限이 1720년이라고 추정되는 吏文이 먼저 간행되고, 그것을 약간 손질하여 書名을 바꾸어 간행한 것이 吏文大師라고 한다. 李秉岐선생은 자신의 책인 가람本이 그 吏文보다 더 오랜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시에 벌써 異論이 있었던 것이다. 吏文을 보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후일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洪淳赫(1947)에 인용된 吏文의 한글 讀法은 「마줌, 하슈」등 吏文大師와 같이 오랜 것이다. 그 先後는 어떻든, 이에 우리는 吏文大師와 비슷한 吏讀學習書로서 吏文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延大本에 대하여 혹 외솔本의 傳寫가 아닐까 하는 疑心을 제기하여 둔다. 洪교수는 외솔本을 베껴 두었다고 하였는데, 延世大學校圖書館의 김상기씨에 의하면 延大本이 洪교수의 舊藏本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延大本에는 「張良餘訣」이란 附錄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남는다. 이 또한 후일을 기다리기로 한다.